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프랑스어의 증거성 표지에 관한 연구

Étude sur les marqueurs évidentiels en français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유재민

프랑스어의 증거성 표지에 관한 연구

Étude sur les marqueurs évidentiels en français

지도교수 심 봉 섭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유 재 민

유재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원장 박 동 열 (인)

부위원장 김 선 희 (인)

위원 심 봉 섭 (인)

국문 초록

프랑스어의 증거성 표지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프랑스어 증거성(évidentialité)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프랑스어 증거성의 특징을 기술하며, 나아가 프랑스어의 증거성 표지들을 분석하여 증거성 의미가 해당 표지의 기본 가치(valeur fondamentale)인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프랑스어 증거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언어 보편적 개념으로서 증거성의 개념과 특성, 문법적 지위, 하위범주 유형을 살펴보았다. 초기 증거성은 양태의 특수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점차 독자적 지위를 지닌 범주로 인정되었으며, 본 논문 또한 증거성을 인식 양태(modalité épistémique)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증거성의 하위범주에 관하여 본 논문은 Willett(1988), Plungian(2010), Aikhenvald(2004)의 증거성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직접증거성(évidentialité directe), 추론증거성(évidentialité inférée), 보고증거성(évidentialité rapportée)으로 증거성의 하위범주를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프랑스어 증거성과 증거성 표지의 특징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프랑스어에서 증거성은 문장 구성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며, 발화 목적에 따른 화자의 선택에 따라 수의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프랑스어에서 증거성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문법범주에 해당하는 형태 또는 어휘적 방법을 통해 실현된다. 이어서 프

프랑스어 증거성 표지로는 ‘인식적 조건법(conditionnel épistémique)’, ‘*devoir*의 인식적 용법(*devoir épistémique*)’, ‘*pouvoir*의 인식적 용법(*pouvoir épistémique*)’, ‘추측의 미래(*futur conjecture*)’를 살펴보고 각각의 증거성 의미와 특징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voir*’, ‘*je trouve que*’, ‘*je pense que*’, ‘*visiblement*’, ‘*à vue de nez*’, ‘*à vue d’œil*’, ‘*il semble que*’, ‘*il paraît que*’와 같이 증거성 의미를 어휘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증거성 범주로 분류되었던 프랑스어 표지들이 실제로 증거성 의미를 기본 가치로 지니고 의미적 차원에서 정보의 출처·획득 방법을 전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devoir*의 인식적 용법과 *pouvoir*의 인식적 용법, 추측의 미래의 경우 증거성 의미가 이 표지들의 기본 가치가 아닌 화용적으로 파생된 부차적 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거성 표지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인식적 조건법은 책임회피(*non prise en charge*)의 의미와 더불어 증거성의 의미를 고유한 의미 가치로 지니며, 따라서 인식적 조건법이 프랑스어 보고증거성 표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주요어 : 증거성, 증거성 표지, 인식 양태, 조건법, *devoir*, *pouvoir*, 미래

학 번 : 2017-22302

목 차

1. 서론	1
2. 증거성	3
2.1. 증거성 개념	3
2.1.1. 증거성의 정의와 개념	3
2.1.2. 증거성의 특성	7
2.2. 증거성의 문법적 지위와 증거성 전략	12
2.2.1. 증거성의 문법적 지위	12
2.2.2. 증거성 전략	15
2.3. 증거성의 하위범주	17
2.3.1. 직접증거성	20
2.3.2. 간접증거성	21
3. 프랑스어의 증거성	25
3.1. 증거성의 증거성에 관한 논의	25
3.2. 프랑스어 증거성 표지에 관한 논의	28
3.2.1. 프랑스어의 문법적 증거성 표지	30
3.2.2. 프랑스어의 어휘적 증거성 표지	32
4. 프랑스어 증거성 표지 분석	38
4.1. devoir와 pouvoir	38

4.1.1. <i>devoir</i> 의 인식적 용법	38
4.1.2. <i>pouvoir</i> 의 인식적 용법	44
4.1.3. <i>devoir_E</i> 와 <i>pouvoir_E</i> 는 증거성 표지인가	47
4.2. 미래	55
4.2.1. 추측의 미래	55
4.2.2. 추측의 미래는 증거성 표지인가	59
4.3. 조건법	62
4.3.1. 인식적 조건법	62
4.3.2. 인식적 조건법은 증거성 표지인가	65
5. 결론	74
Bibliographie	76
Résumé	85

표 목 차

[표 1] Willett(1988:57)의 증거성 분류	18
[표 2] Plungian(2010:37)의 증거성 분류	19
[표 3] Aikhenvlad(2004:65)의 증거성 분류	19
[표 4] 증거성의 하위 유형	24
[표 5] 프랑스어 증거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다룬 어휘·형태	28
[표 6] <i>devoir</i> 의 조동사적 의미(Robert 2010:725)	39
[표 7] 인식 양태와 증거성의 관계(Van der Auwera & Plugian(1998:86)	51

1. 서론

증거성(évidentialité)이란 화자가 발화내용의 정보를 획득한 출처 또는 방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를 말한다. 프랑스어 연구에서는 1980년대 후반 증거성 개념의 도입 후 주로 개별 표현에 대한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프랑스어 증거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기존에 양태, 서법, 시제 등으로 분류되었던 표현들을 증거성 범주로 재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식적 조건법(conditionnel épistémique), *devoir*와 *pouvoir*의 인식적 용법, 추측의 미래(futur conjecture)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개별 표현들이 어떤 정보 출처 표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았음에 반해 범주적 차원에서 프랑스어의 증거성 전반을 다루는 연구는 부족하다. 한편 프랑스어 증거성 표지로 분류되는 어휘 또는 형태들은 증거성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대해 갖는 신뢰도 정도를 표현하는 인식 양태(modalité épistémique) 표지로 다루어졌다. 많은 연구에서 증거성을 인식 양태와는 독립된 범주로 다루고 있으며, 본 논문 또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증거성 의미가 이 표현의 기본 가치(valeur fondamentale)인 경우와 양태 가치로부터 파생된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프랑스어 증거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프랑스어 증거성의 특징을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다음 프랑스어 증거성 표지들을 분석하여 해당 표현들의 기본 가치가 증거성인지 양태인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프랑스어 증거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언어 유형

론적 관점에서 증거성의 개념과 특성, 하위범주 유형을 살펴본다. 증거성은 언어에 따라 문법화와 체계화 정도가 상이하므로 이 장에서 제시하는 증거성의 특징들이 프랑스어의 경우에 모두 적용되지는 않으나, 프랑스어 증거성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이 될 것이다.

3장에서는 프랑스어의 증거성이 나타내는 유형적 특징을 정리하고,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프랑스어에서 증거성 표지로 분류되었던 어휘와 표현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우선 프랑스어 연구에서 증거성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의 문제(évidentialité vs. médiativité)에 대하여 검토해본 후 선행 연구를 토대로 프랑스어 증거성의 문법화 정도와 하위 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프랑스어에서 증거성 표지로 분류되었던 표현들을 문법적 표현과 어휘적 표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표지가 나타내는 증거성 의미와 증거성의 실현 방식, 유형 등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프랑스어의 문법적 증거성 표지로 분류되었던 네 가지 표현들이 실제로 증거성 표지의 지위를 지니는지 논의한다. 먼저 각 표지를 대상으로 하는 진행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다. 그다음 증거성과 인식양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devoir*와 *pouvoir*의 인식적 용법, 추측의 미래는 양태를 기본 가치로 지니며, 반대로 인식적 조건법은 증거성을 기본 가치로 함을 설명한다.

2. 증거성(évidentialité)

2.1. 증거성 개념

2.1.1. 증거성의 정의와 개념

증거성(évidentialité, *evidentiality*)이란 발화내용의 정보를 획득한 출처 또는 방법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말한다. 증거성의 개념은 Boas(1947)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Jacobsen 1986:3). Boas는 아메리칸인디언 언어를 연구하던 중 콰키우틀어(Kwakiutl)의 네 개의 접미사를 ‘정보 출처를 나타내는 접미사들(suffixes denoting the source of information)’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Jakobson(1957)은 콰키우틀어, 호피어(Hopi) 등과 같은 아메리칸인디언 언어에서뿐만 아니라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에서도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는 동사 변화가 있음을 알리면서 최초로 ‘evidenti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법(mode)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문법범주로서 증거성을 분류하였다(Jacobsen 1986:5).

증거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언어 중 하나는 콜롬비아,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타리아나어(Tariana)이다. 타리아나어는 접미사를 통해 형태적으로 다음의 발화를 구분한다.

(1) 타리아나어의 증거성 표지(Aikhenvald 2004:2~3)

a. Juse irida di-manika-ka

‘José has played football(we saw it)’

b. Juse irida di-manika-manhka

‘José has played football(we heard it)’

c. Juse irida di-manika-nihka

‘José has played football(we infer it from visual evidence)’

d. Juse irida di-manika-sika

‘José has played football(we assume this on the basis of what we already know)’

e. Juse irida di-manika-pidaka

‘José has played football(we were told)’

위 발화들은 모두 ‘조세가 축구를 했다’라는 내용을 전달한다. 그러나 접미사에 따라 발화내용이 화자가 직접 눈으로 본 사실(1a)이거나, 축구를 하는 상황을 청각을 통해(공을 차는 소리, 호루라기 소리 등) 획득하였음(1b)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화자는 자신이 관찰한 사실(1c) 또는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을 기반으로 추론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였음(1d)을 드러낼 수 있으며, 혹은 이 정보가 화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것(1e)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컨대 타리아나어는 화자가 발화 시 발화내용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획득한 방법 또는 경로를 전달하며 이를 접미사를 통해 언어적으로 명시한다(Aikhenvald 2004:1).

그런데 증거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증거성을 정보의 출처와 관련하여 정의하는 것은 모든 연구에서 공통된 양상을 보이나 증거성의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크게 넓은 의미에서의 증거성과 좁은 의미에서의 증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Dendale 1991:45).

넓은 의미에서의 증거성은 발화내용이 다루는 정보의 출처와 더불어 이를 토대로 화자가 자신의 발화내용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신뢰성의 정도 또한 증거성의 정의적 요소로 포함한다. Hoff(1986:49)는 “증거성 표지들은 진술의 신뢰도를 위해 어떤 종류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낸다”¹⁾라고 정의하며, Mithun(1986:89)은 증거성이 전달된 정보의 신뢰도에 관한 제한을 가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Matlock(1989:215)은 증거성을 정보의 확실성 정도를 코드화한 것으로 보았다.

넓은 의미에서 증거성은 증거성을 하나의 독립된 언어 범주로 간주하기 보다는 기존 문법 개념에서 정보와 관련되어 있던 범주, 특히 정보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인식 양태(modalité épistémique)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Palmer(1986:51)는 인식 양태를 정의할 때 소문, 인용, 감각 증거 등의 증거성을 인식 양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Palmer(2001:24)에서는 증거성을 인식 양태와 독립시켰으나 여전히 인식 양태와 증거성을 명제 양태(propositionnal modality)라는 상위 범주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다.

반면에 좁은 의미에서의 접근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내용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 또는 방법을 통해 획득하였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접근을 말한다. Bybee(1985:184)는 증거성을 명제에서 정보의 출처를 가리키는 표지로 정의하며, Dendale(1991:51)은 정보의 출처 또는 획득 방법을 나타내는 것을 증거성 표지라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De Haan(1999:2)은 증거성을 발화에 대한 정보의 출처를 다루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Vettters(2012:32) 역시 증거성을 정보의 출처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한다. 이외에도 인식적 출처(sources épistémiques)(Kronning 2003:135), 지식 접근 방법(mode d'accès à la connaissance)(Guentchéva 2004:21), 정보 획득의 방법(송재목 2009:32) 등 용어는 상이하나 모두 증거성을 정보의 출처, 획득 방법에 초점을 맞춰 정의하고 있다.

증거성을 좁은 의미에서 다루는 연구에서는 정보의 출처와 관련된 개념 외의 나머지 개념, 특히 발화내용의 확실성 정도와 관련된 내용을 배

1) Evidentials indicate what kind of evidence is available for the reliability of the statement in which they are used.

제하며, 기존의 타 문법 범주와는 독립된 범주로서 증거성을 다룬다. Anderson(1986:274)은 증거성이 이제까지 연구되었던 언어적 개념과는 다른 특수한 문법적 현상으로서 증거성 범주를 독립적 범주로 주장하였다. De Haan(1999:25)은 증거성과 인식 양태가 개념적으로 연관될지라도 두 개념의 의미는 완전히 상이하므로 증거성을 인식 양태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Aikhenvald(2014:44)는 증거성이 발화내용의 유효성, 화자의 책임의 정도와는 관련이 없는 문법 범주라고 주장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발화의 신뢰도와 정보의 출처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출처가 명확하다면 여기서 나온 정보의 신뢰도는 당연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면 우리가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할 때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출처가 불확실한 사건에 관해 말할 때 자신의 발화에 대해 확실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Mithun(1986:89)은 화자는 정보의 출처를 발화 상에 표시함으로써 발화내용의 진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청자는 이 출처가 가진 특성을 바탕으로 정보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Palmer(1986:70)는 화자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그가 지닌 증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특정 체계가 인식 양태인지 증거성인지 규정하는 일을 무의미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성과 인식 양태 사이에 개념적 접점이 존재할지라도 출처와 판단이 항상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화자는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발화에 이러한 의심의 뉘앙스를 담을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들은 정보라 할지라도 화자는 이 정보를 확실한 것으로 이 확실성을 자신의 발화에 반영하여 발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발화내용이 어떠한 출처로부터 나왔는지를 말하는 것과 이 출처를 바탕으로 발화내용의 확실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De Haan 1999:4).

또한 인식 양태와 증거성이 독립된 개념이라는 사실은 실제로 증거성을 인식 양태와 분리된 독자적 문법범주로 지닌 언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Kronning(2003:139)은 투유카어(Tuyuca)가 증거성을 나타내는 접미사와는 별개로 의심을 나타내는 접사를 지니고 있으며, 두 표지가 하나의 발화 내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므로 투유카어에서 증거성과 인식 양태는 체계적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페르시아어 방언인 타지크어(Tadjik) 또한 증거성을 나타내는 형태와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형태가 분리되어 발달하였다(Lazard 2000:213).

이처럼 인식 양태와 증거성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이 증거성을 인식 양태의 일부로 보기 위한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식 양태와 증거성은 각각 ‘확신의 정도’와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며 정보의 출처가 발화내용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출처를 제시하는 것과 이를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또한 증거성과 인식 양태를 확연히 구분하여 문법화한 언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증거성을 독자적 문법범주로 봐야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제 내용의 정보에 대한 확실성 또는 신뢰성 정도 판단은 인식 양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증거성은 명제가 가리키는 사건 또는 정보를 획득한 출처와 방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1.2. 증거성의 특성

이 장에서는 증거성의 범언어적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증거성이 지닌 특성들은 주로 증거성에 부여된 의미적 정의인 정보의 출처 또는 획득 방법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① 명제 내용과 증거성 내용의 분리

증거성의 첫 번째 특징은 명제 내용과 이 내용이 획득된 출처를 가리키는 증거성 내용이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증거성 표지를 사용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발화내용에 해당하는 명제적 정보와 이를 획득한 출처에 대한 정보로 분리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증거성 표지가 사용된 명제에 대하여 명제 내용이 아닌 증거성 내용만을 질문하거나 의심할 수 있도록 한다(정경미 2016:50).

(2) A : 철수 지금 축구하더라.

B : 오다가 본거야?

C : 에이, 잘못 본거야. 철수 지금 한국에 없는데 뭐.

한국어의 ‘-더-’는 화자가 발화내용의 정보를 직접 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성 표지이다. A의 발화를 들은 B와 C가 각각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거나 의구심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명제 내용(철수가 지금 축구한다)이 아닌 A가 정보를 획득한 방법(그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명제부와 증거부가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또 다른 테스트들이 존재한다(김진웅 2012:114). 이러한 테스트의 예로 부정(négation)을 통한 테스트(De Haan 1999, Faller 2002)를 들 수 있다.

부정을 통한 테스트는 증거성 내용이 부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명제 내용과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De Haan 1999)²⁾. De

2) 그러나 모든 언어의 증거성이 부정 범위 밖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 Aikhenvald(2004:256)은 증거성이 부정 범위 내에 놓이는 언어로 태국 북부 산악지방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아카어(Ahka)를 예로 든다.

Haan(1999:11~12)은 아래 예문을 통해 명제 내용이 부정될지라도 부정이 작용하는 범위에 증거성 의미는 포함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3) Het *moet geen* goede film zijn.

‘그 영화 좋지 않대.’

a. 명제 의미: 그 영화가 좋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b. 증거성 의미: 화자는 그 영화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자는 그 영화가 좋다는 이야기를 안 들었다.

네덜란드어의 *moeten*(*moet*)은 화자가 정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획득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성 표지로 쓰이는 동사이다.

(3)에서 *moeten*과 함께 부정을 나타내는 *geen*이 사용될 때 부정되는 대상은 명제 의미(3a)에 해당하며, 증거성 의미(3b)는 부정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처럼 증거성 내용이 명제 내용과는 별개로 부정되거나 의심, 질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증거성 내용과 명제 내용이 독립적이라는 사실의 근거가 된다.

② 주어 인칭과의 관계

증거성은 화자가 발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획득하였는지를 발화상에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범주이며, 이때 정보를 획득한 방법뿐만 아니라 정보 획득의 주체 또한 증거성 내용에 포함된다. 발화내용의 정보를 파악한 사람이 화자 자신인지 또는 제삼자인지에 따라 증거성 표지의 선택이 달라지는데, 이는 증거성 표지가 발화의 주어 인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화자는 자신이 한 행동을 말할 때 정보를 직접 획득함을 가리키는 직접증거성 표지를 사용하게 되며, 따라서 정보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간접증거성 표지의 사용

은 배제될 것이다. 몽골어에서 화자가 정보를 직접 획득하였음을 표현하는 ‘-*laa*’(-*lee*)는 주어와 관계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정보를 간접적 경로를 통해 획득하였음을 가리키는 ‘-*jee*’는 1인칭 주어(*Bi*)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송재목 2007:8~9).

(4) *Ter ongocon-d -laa/-jee.*

‘그는 비행기를 탔다(라는 사실을 보았다/추론했다)’

(5) *Bi öčigdör London-d ir-lee/-*jee*

‘나는 어제 런던에 왔다(라는 사실을 보았다/*추론했다)’

화자가 자신의 행위 또는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획득한 주체는 화자 자신이며, 따라서 직접증거성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에서 보듯이 간접증거성 표지와 1인칭 주어를 공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증거성을 문법화한 언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송재목 2015:1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1인칭일 때 간접증거성 표지의 사용이 범언어적으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화자가 의식하지 못했거나 완전히 책임지지 않는 상황일 때 1인칭 주어와 간접증거성 표지가 함께 사용되며, Aikhenvald(2004:217)는 이러한 현상을 ‘1인칭 효과(first person effect)’라 명명한다. 증거성의 1인칭 효과는 의미의 함축을 야기한다. 브라질 아마조나스주의 자라와라어(Jarawara)는 아래 두 예문에서 보듯이 발화내용의 의미는 동일하나 증거성 표지의 선택에 따라 발화의 기저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다(Aikhenvald 2004:221).

(6) *o-hano-hara o-ke*

‘I got drunk(deliberately)’(firsthand)

(7) *o-hano-hani o-ke*

‘I got drunk(and don’t recall it)’(non-firsthand)

두 발화 모두 자신이 취했다는 화자 본인의 행위 또는 상태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6)과 같이 직접증거성 표지(-*hara*)를 사용한다. 반면에 간접증거성 표지(-*hani*)를 사용할 경우(7) 화자가 완전히 취해 전날 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함축된다. 이때의 간접증거성 표지는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였음을 표시한다.

한편 간접증거성 표지뿐만 아니라 직접증거성 표지까지도 1인칭 주어와 공기될 수 없는 언어도 존재한다(Aikhenvald 2004:231). 이러한 현상은 주로 증거성이 완전히 문법화되지는 않은 언어, 다시 말해 증거성이 수의적인 언어에서 발견된다(Aikhenvald 2004:231, 정경미 2016:53). 이 언어들에서 1인칭 주어는 간접증거성과 직접증거성 표지 모두와 결합에 제약을 보이며, 1인칭 주어가 함께 사용될 경우 특수한 의미 함축을 나타낸다. 중국 티베트어족에 속하는 라다크어(Ladakhi)의 직접증거성 표지는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와 사용되지 않으나, 화자가 거울이나 꿈과 같이 다른 매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봤을 때와 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직접증거성과 1인칭 주어가 함께 쓰일 수 있다(Koshal 1979³). 한국어의 직접증거성 표지인 ‘-더-’와 ‘-네-’ 또한 일반적으로 1인칭 화자를 허용하지 않으나 아래 (8), (9)와 같이 화자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1인칭 주어와의 결합이 허용되기도 한다(송재목 2015:117~118).

3) Aikhenvald(2004:232)에서 재인용

- (8)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병실에 있더라.
- (9) 모두 맥주를 마시는데 나만 소주를 마시네.

이렇듯 각각의 언어에서 증거성의 문법화 정도에 따라 증거성 표지와 인칭 주어의 공기 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의미 효과의 차이는 있으나 증거성과 주어 인칭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은 범언어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2.2. 증거성의 문법적 지위와 증거성 전략

2.2.1. 증거성의 문법적 지위

말화 가운데 정보의 출처나 정보 획득 방법이 드러나는 양상은 언어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에서는 *je vois*, *je suppose que*, *on m'a dit que*와 같은 표현을 활용해 정보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표현들 모두가 증거성 표지에 해당하는가? 이 절에서는 증거성의 문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증거성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증거성은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의 존재를 의미한다(Aikhenvald 2004, 2007, Anderson 1986, Lazard 2000, 2001, Plungian 2001). 이 연구들에 의하면 증거성은 형태적으로 굴절어미(flexion)·접어(clitique)·소사(particule) 등의 문법소에 한정되며, 성·수·시제와 같이 독립된 문법 범주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Anderson(1986:275)은 기존에 증거성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언어들을 종합하여 증거성 식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때 형태적 기준으로 굴절어미, 접어와 같은 통사적 요소만이 증거성 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Aikhenvald(2003:13)는 위와 같이 정보의 출처가 문법적 수단을 통해 표시되는 경우와 어휘적 수단을 통해 표시되는 경우를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khenvald(2003:2)에 의하면 증거성은 양태, 시제, 서법 등의 하위 유형이 아닌 그 자체로 독립적인 문법 범주이다. 그러나 모든 언어에 문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문법화의 양상 또한 언어마다 상이하다. 이는 성(genre) 체계가 문법화된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문법적 성이 실제 생물학적 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과 같이 증거성도 실제 증거와 같은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증거성 표지가 사용되어 확실성, 개연성 등의 의미가 파생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지 화용적 확장일뿐 증거성은 단지 문장 내에서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는 문법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Lazard(2001:360)도 모든 언어는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표현이 모두 문법화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Lazard는 증거성의 문법화와 관련하여 언어를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유형은 위에서 언급했던 타리아나어와 투유카어, 윈투어(Wintu) 등과 같이 발화내용에 대한 정보의 출처를 문장 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언어 유형이다. 이러한 언어에서는 증거성이 시제나 상과 같이 하나의 문법 범주로서 체계화되어 있으며, 증거성이 쓰이지 않는 경우(무표향)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증거성이 의무적인 언어는 전세계 언어 중 약 25%에 해당한다(Aikhenvald 2004:17).

두 번째 유형은 증거성을 문법 범주로 존재하기는 하나 첫 번째 유형과는 달리 증거성의 사용이 수의적인 언어 유형으로서,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등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언어들은 정보의 출처를 의미하는 의존형태소, 접어, 첨사 등의 문

법적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발화 상에서 증거성의 출현은 강제적이지 않으며 화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마지막 유형은 증거성이 문법적 체계를 이루지 않는 언어로 대다수의 유럽 언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언어들에는 앞선 두 언어 유형과 달리 증거성을 나타내는 독립된 형태소가 없으며, 문법화 또한 진행되지 않았다. 이 언어들은 일반적으로 어휘 또는 타 문법 범주에 해당하는 표지 등을 통해 정보의 출처·획득 방법을 표시한다.

모든 언어는 정보의 출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표현 모두가 증거성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문법적 증거성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시간(time)과 시제(tense)의 구분과도 유사하다 볼 수 있다. 우리가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과거나 현재와 같은 시제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오늘’, ‘어젯밤’, ‘3일 후’와 같이 어휘 표현을 통해 나타낼 수도 있다. 두 표현 모두 시간의 개념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나, ‘오늘’, ‘어젯밤’과 같은 표현을 문법 범주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휘적 방법과 문법적 방법 모두 존재하나, 이 중 문법적 표현만이 증거성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Aikhenvald(2014:44)는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발화내용 정보의 획득 방법·출처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인 ‘증거성(evidentiality)’과 이에 대한 개념 범주(conceptual category)에 해당하는 ‘정보 출처(information source)’를 구분하여 사용하며, 증거성이 모든 언어에 문법 범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범언어적 차원에서 증거성의 범주적 지위는 형태·통사적으로 제한된 문법 범주에 해당하며, 어휘적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 증거성 범주에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Lazard가 지적하고 있듯이 모든 언어에서 증거성이 문법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아니며, 문법적 증거성 표지가 없는 언어들 경우 정보 출처의 의미는 어휘를 통해 표현된

다. 3장에서 보듯이 프랑스어는 증거성이 의무적인 언어가 아니며, 증거성의 문법 체계 또한 타리아나어와 같이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선행 연구에서 다루는 프랑스어 증거성 표지 역시 문법적 표지와 어휘적 표지가 혼재한다. 앞서 밝혔듯이 본 논문은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프랑스어의 증거성과 증거성 표지에 관해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증거성 표지 중 문법적 표지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어휘적 표지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2.2.2 증거성 전략

증거성의 의미가 어휘적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 유형은 동사, 부사, 형용사, 삽입구, 절 등 매우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 범주에 해당하는 어휘와 형태가 정보의 출처를 표현하는 경우 역시 존재하는데, Aikhenvald(2007:213)는 이를 ‘증거성 전략(stratégie évidentielle)’이라 부른다. 증거성 전략이란 증거성 의미를 기본 의미로 가지지 않은 언어 범주에서 의미의 확장을 통해 부차적 의미로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증거성 전략으로 사용되는 언어 범주는 서법(mode), 양태(modalité), 시제(temps), 인칭(personne), 명사화(nominsation), 보어절(complétive) 등이 있다(Aikhenvald 2004:105). 예를 들어 아래 예문에서 동사 ‘hear’ 다음에 오는 보어절의 유형에 따라 전달되는 함축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Dixon 2005:270~271).

(10) I heard John letting off the fireworks.

(11) I heard *that* John let off the fireworks(Dixon 2005:270).

(10)은 John이 폭죽을 터뜨리는 사건을 청각을 통해 직접 지각하였음을 함축하는 반면 보문소(complementizer) *that*이 들어간 (11)에서는 위의 사건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보문소 *that*은 ‘지각 동사’와 함께 쓰이면서 종속절을 보어로 구실하게 하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that* 다음의 종속절의 내용이 화자가 단지 간접적으로 획득한 사실임을 내포하는 증거성 기능도 나타내며, 이는 영어에서 증거성 전략으로 *that*을 사용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성 전략은 화자가 정보를 직접 지각하였음을 표현하는 직접증거성보다 간접적으로 획득함을 가리키는 간접증거성의 의미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Aikhenvald 2007:214). 영어의 *must*, 프랑스어의 조건법과 같이 기존 언어 연구에서 발화내용의 신뢰성 정도를 가리키는 인식 양태 표지들이 각각 추론증거성과 보고증거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증거성이 발달하지 않은 언어에서 직접증거성은 대개 무표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언어의 화자는 자신의 발화에 대해 덜 확신하거나 신뢰하지 못함을 인식 양태 표지를 사용해 표현한다. 이때 화자의 불확실함은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 화자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의미로 확대해석되며, 이를 통해 간접증거성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증거성 전략은 종종 문법화 과정을 거쳐 문법적 증거성으로 발전한다(Aikhenvald 2003:20). 압하지야 공화국(Abkhaziya)의 압하스어(Abkhaz)에서 추론증거를 표시하는 증거성 표지는 미래 표지에서 비롯되었으며, 타지크어의 비목격(non-visuel) 증거성 표지는 완료형(parfait)으로부터 발달하였다. 리투아니아어의 보고증거성, 추론증거성 표지 또한 각각 능동 분사(participe actif), 수동 분사(participe passif)의 의미 확장에서부터 문법적 증거성 체계로 발달하였다. 또한 증거성 표지의 기원은 지각 동사(verbe de perception), 전달 동사(verbe de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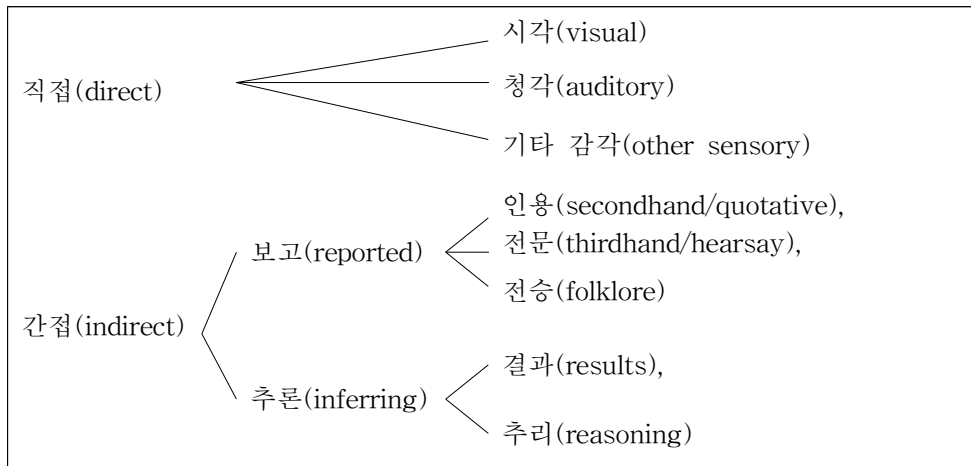
외견 동사(verbe d'apparence), 인지 동사(verbe de cognition)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Dendale et Bogaert 2012:22~23). 미스텍어(Mixtec)와 같이 '말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부터 보고증거성 표지가 발달한 경우와 원투어, 마리코파어(Maricopa)와 같이 '보다', '듣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직접증거성 표지로 파생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De Haan 1999:23~24).

2.3. 증거성의 하위범주

증거성의 하위범주는 정보의 획득 방법·출처의 유형에 따라 분류된다. 학자마다 분류하는 방법이나 증거성의 하위범주를 부르는 방식의 차이가 있으나, 이 장에서는 증거성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분류인 Willett(1988), Plungian(2010), Aikhenvald(2004)의 분류를 종합하여 증거성의 하위범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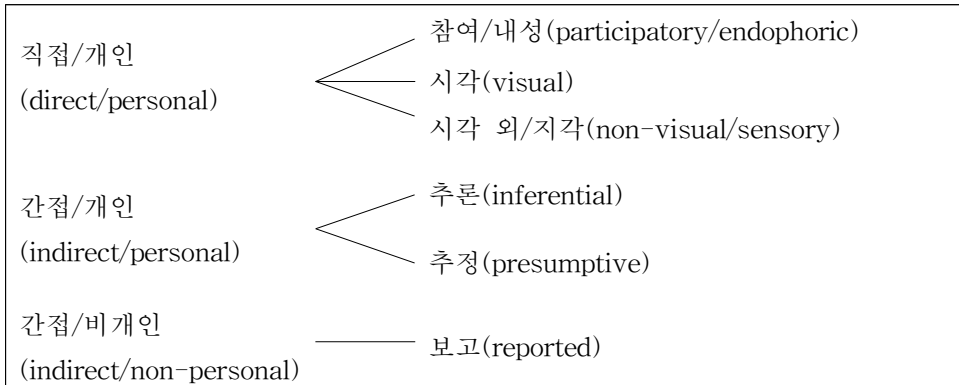
Willett(1988)은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최초로 증거성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Willett(1988:57)이 제시한 증거성의 첫 번째 분류 기준은 발화내용의 정보 출처에 대해 화자가 '직접(direct)'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간접(indirect)' 증거만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거한 기준이다. Willett은 간접증거성을 다시 추론(inferring) 증거성과 보고(reported) 증거성으로 구분한다.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Willett의 증거성 유형 분류는 이후 많은 증거성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다.

[표 1] Willett(1988:57)의 증거성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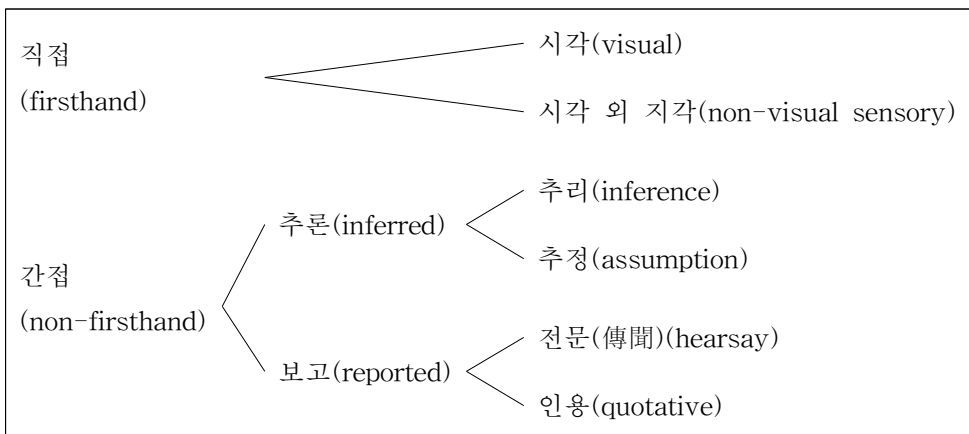
한편 직접·간접증거성의 분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Plungian(2001:353)에 따르면 레즈기어(Lezgian), 라트비아어와 같은 언어의 증거성은 직접·간접 증거의 기준이 아닌 정보 출처가 화자인 경우(personal)와 그렇지 않은 경우(non-personal)로 구분된다. 이를 근거로 Plungian(2010:29)은 발화내용 정보의 획득과정에 화자가 개입한 경우인 ‘개인적 증거’와 정보 획득과 화자가 완전히 분리된 경우인 ‘비개인적 증거’를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Willett(1988)의 증거성 유형을 세 그룹으로 재분류한다. Plungian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Willett이 언급한 증거성 유형 중 직접증거성과 간접증거성의 추론증거성은 화자가 정보 획득의 주체가 되므로 개인적 증거에 해당한다. 반대로 보고증거성의 경우 정보는 화자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나왔으며 화자는 정보 획득 방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므로 비개인적 증거에 해당한다.

[표 2] Plungian(2010:37)의 증거성 분류



한편 Aikhenvald(2004:63~64)는 전 세계 500여 개의 언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증거성 하위범주를 6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Aikhenvald는 직접증거성을 ‘시각(visual)’ 증거와 ‘시각 외 지각(non-visual sensory)’으로 구분한다. 또한 Willett이 제시한 것과 같이 간접증거성은 추론증거성과 보고증거성으로 나뉘며 추론증거성은 ‘추리(inference)’와 ‘추정(assumption)’으로, 보고증거성은 ‘전문(hearsay)’과 ‘인용(quotative)’ 증거로 분류한다.

[표 3] Aikhenvald(2004:65)의 증거성 분류



이처럼 증거성의 하위범주를 분류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으나 증거성이 표현하는 정보 획득 방법을 크게 ‘직접 관찰’, ‘추론’, ‘보고’로 구분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는 증거성의 하위범주에 관하여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2.3.1. 직접증거성

직접증거성(évidentialité directe)이란 발화내용에 포함된 정보를 화자 자신이 경험하거나 확인하였음을 나타낸다. 직접증거성은 화자가 정보 획득에 직접 관여하며 화자로부터 정보가 생성된다는 점에서 Plungian이 제시한 개인적 증거에 해당한다. 직접증거성에 포함되는 증거 유형으로는 ‘지각(perceptive) 증거’, ‘내성(endophoric) 증거’, ‘참여(participative) 증거’가 있다.

지각 증거는 직접증거성의 대표적인 증거 유형으로 ‘시각(visual) 증거’와, ‘비시각(non-visual) 증거’로 구분된다(Aikhenvald 2004, Plungian 2010). 시각 증거는 화자가 발화내용의 사건을 눈으로 직접 지각한 것이다. 비시각 증거는 화자가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시각 이외의 감각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 경우이다. Willett(1988)의 경우 지각 증거를 시각(visual), 청각(auditory), 기타 감각(other sensory)으로 분류하나, Aikhenvald(2004:64)와 Plungian(2010:33)은 실제 자연어에서 시각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감각 증거에 대해서 각각의 개별 증거성 표지를 갖춘 언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일한 증거성 표지를 통해 실현되므로 시각 증거와 시각 외 증거로의 구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발화내용은 위와 같이 화자가 감각기관을 통해 획득한 정보일 수 있으나, 화자의 기분, 의도, 바람, 신체 및 심리 상태의 변화 등 화자 자신만

이 알 수 있는 정보일 수 있다. 이처럼 발화내용이 화자의 정신적, 감정적, 내적 상태와 관련되었음을 표시하는 증거성 유형을 Plungian(2001:352)은 ‘내성증거’라 명명하고 있다. Plungian(2001)은 내성 증거를 비시각증거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 것과는 달리 Plungian(2010)은 내성증거를 참여 증거와 함께 독립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각 증거와 유형과 구분한다. 참여 증거란 화자가 발화내용의 사건을 직접 관찰한 것을 넘어 사건에 스스로 참여하였고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수행하였음을 나타낸다(Plungian 2010:34). 내성 증거와 참여 증거는 오직 화자만이 인지하고 획득할 수 있으며 제삼자가 정보 획득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접증거성에 해당하나, 외부 사실에 대한 화자의 관찰의 결과임을 나타내는 지각 증거성과는 차이가 있다.

2.3.2. 간접증거성

간접증거성(*évidentialité indirecte*)은 화자가 직접 정보를 경험하거나 관찰하지는 못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였음을 나타낸다. 간접증거성은 다시 정보 획득 방법에 따라 ‘추론증거성’과 ‘보고증거성’으로 구분된다.

추론증거성(*évidentialité inférée*)이란 관찰된 사실, 화자의 기존 지식 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추론한 증거성 유형이다. 화자는 몇 가지 단서들로부터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 있었음을 추론하는 경우이며, 화자는 이를 추론증거성 표지를 통해 발화 내에 표시한다. 타리아나어, 투유카어, 윈투어 등 복잡한 증거성 체계를 갖춘 언어에서는 추론의 근거가 되는 단서 또는 전제의 유형을 기준으로 추론증거성을 분류하기도 한다(Aikhenvald 2003:6). 이 언어들의 경우 화자가 지각하였고 명확하게 관

찰 가능한 사실을 토대로 한 사고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증거 유형인 ‘추리(inferred)’와 일반 원리, 상식,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 ‘추정(assumed)’을 구분한다. 추론증거성은 화자가 발화내용의 정보에 직접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직접증거성과는 구분되지만, 정보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화자라는 점에서 Plungian은 직접증거성과 함께 개인적 증거에 포함시키고 있다.

간접증거성의 두 번째 유형은 보고증거성(*évidentialité rapportée*)이다. 보고증거성은 발화내용의 정보를 화자가 직접 관찰하지도, 단서들을 통해 추론하지도 못하였으나 다른 사람 또는 소문 등을 통해 전해 들었음을 발화 내에 표시하는 증거성 유형이다. 보고증거성을 지닌 언어 대부분에서는 정보를 전달한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와 출처 화자가 명확한 경우 모두 보고증거성 표지를 통해 표시한다. 그러나 멕시코 북서부에서 사용되는 코라어(Cora)와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코만치어(Comanche) 등의 언어에서는 발화의 출처가 분명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인 인용(quotative)과 출처 화자가 불명확하며 언급이 없는 경우인 전문(hearsay)을 구분하며 각각에 대응하는 증거성 표지를 지니고 있다(Aikhenvald 2004:177~178).

물론 보고증거성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보가 화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획득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인용 화법(*discours rapporté*)을 들 수 있다. 인용 화법과 보고증거성은 모두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미적 공통점을 지니며, 이를 통해 보고증거성과 인용 화법은 불확실한 정보 표현, 사건에 대한 거리두기(*distancing*)와 이에 따른 책임 회피(*removing all responsibility*) 등의 유사한 의미 확장(*semantic extensions*)을 나타낸다(Aikhenvald 2004:135~136). 그러나 인용 화법이 쓰인 명제는 출처 화자가 전달한 발화내용 정보와 이 출처 화자 모두에 초점을 두는 반면, 보고증거성 표지의 경우

오직 발화내용 정보만을 중심으로 한다. 다시 말해 화자는 인용 화법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와 이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두 가지를 표현한다. 반면에 보고증거성은 정보 획득 방법이 화자의 지각, 추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방법’임을 나타낼 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 Mushin(2001:121~122)은 인용문은 출처 화자의 발화 행위와 발화내용의 정보를 모두 전경(foreground)화하는 반면, 보고증거성은 발화내용 정보만을 전경화하며 출처 화자의 발화 행위에 대해서는 후경(background)화한다고 설명한다.

Kronning(2012, 2018)은 인용 화법에 속하는 간접 화법(discours indirect)은 해석, 추론, 환언 등 원발화(énoncé d’origine)에 대한 재진술(reformulation)이므로 원발화와는 다른 발화 행위(acte d’énonciation autre)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보고증거성은 원발화의 인지 내용을 단지 차용할 뿐 재진술하지 않는다(Kronning 2012:88). 간접 화법은 담화적 구성 형태(discourse configuration)로서 원발화의 인지 내용과 더불어 이 사실을 전해 들었음을 나타내는 화자 자신의 고유한 발화 행위를 표상한다. 반면에 보고증거성 표지는 문법 표지이기 때문에 원발화 이외에 또 다른 발화 행위를 표상하지 않는다(Kronning 2018:78~79). 이러한 차이는 원발화로부터 차용된 정보에 대하여 화자가 자신의 견해를 추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분명히 드러난다.

(12) {Marie est malade}

- a. *Pierre dit que* Marie est (peut-être/probablement) malade.
- b. Marie *serait* (*peut-être/*probablement) mal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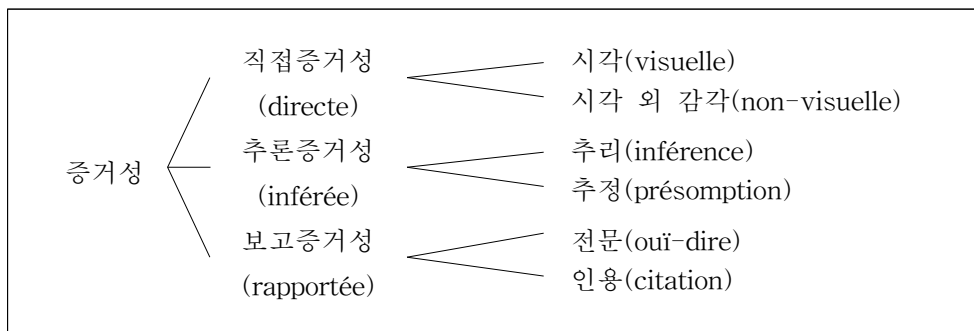
‘Marie가 아프다’라는 인지 내용에 대하여 (12a)는 간접 화법, (12b)은 증

거성 표지를 통해 이 내용의 출처가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다. 간접 화법을 사용한 (12a)의 화자는 전달된 발화내용에 관한 자신의 태도를 양태부사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으나, 증거성 표지가 사용된 (12b)에서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부사가 함께 사용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Kronning 2012:88~89).

지금까지 증거성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증거성 하위범주들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된 증거성의 하위범주 유형들이 한 언어 내에서 모두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언어마다 고유의 증거성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표현하는 정보 출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체로 Lazard가 제시한 언어 유형(2.2.1)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언어의 경우 증거성이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며, 이와는 달리 증거성이 문법화되지 않은 세 번째 언어 유형의 경우 증거성 유형이 크게 세분화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Plungian의 증거성 유형 분류와 같이 ‘직접증거성’, ‘추론증거성’, ‘보고증거성’로 증거성의 하위범주 유형을 [표 4]와 같이 분류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4] 증거성의 하위 유형



3. 프랑스어의 증거성

3.1. 프랑스어의 증거성에 관한 논의

프랑스 언어학에서 증거성에 관한 연구는 양태, 시제, 상 등의 다른 범주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었다. 프랑스어로 증거성을 가리키는 *évidentialité*는 Co Vet(1988)이 최초로 도입한 용어로 영어의 *evidence*로부터 파생된 *evidentiality*를 프랑스어로 옮긴 것이다(Dendale et Tasmowski 2001:340). 그러나 영어의 *evidence*가 ‘증거’, ‘흔적’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어의 *évidence*는 ‘명증성’, ‘확실성’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로 인해 *évidentialité*는 자칫 발화내용이 확실함을 표현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영어의 *evidential*, *evidentiality*를 그대로 옮긴 *évidentiel*, *évidentialité*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Guentchéva 1994, Lazard 2001).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프랑스 학자들은 *évidentialité* 대신 간접, 매개를 의미하는 *médiatif*에서 파생된 용어인 ‘매개성(*médiatif*, *médiativit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Guentchéva 1994:8).

일반적으로 프랑스 언어학에서 매개성과 증거성은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되거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두 용어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두 용어가 가리키는 개념에 차이가 존재한다. 증거성은 화자의 발화내용에 대한 출처에 초점을 둔다면, 매개성은 화자의 거리두기(*distanciation*)와 같이 발화내용의 출처를 언급함으로써 생성되는 의미 효과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 볼 수 있다(Dendale et Tasmowski 2001:341). 또한 증거성과 매개성은 하위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다. Guentchéva(1994:9)에 따르면 매개성의 하위범주는 1) 보고된 사실(*fait rapporté*), 2) 추론된 사실(*fait inféré*), 3) 예상치 못한 사실(*fait de*

surprise)로 구성된다. Guentchéva의 분류에는 보고증거성과 추론증거성에 해당하는 유형의 범주는 존재하나 직접증거성의 유형은 보이지 않는다. 매개성은 용어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화자가 자신의 발화내용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였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앞에서 본 것처럼 증거성에서는 화자가 직접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 역시 하위 유형에 포함시킨다.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증거성이라는 용어만을 채택해 사용한다.

Co Vet(1988)이 프랑스 언어학에 증거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이래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거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Vetters 2012:33). Dendale(1991)은 프랑스어의 인식적 표지(marquage épistémique)에 대한 연구에 증거성의 개념을 사용하며, 조건법(conditionnel), 양태 동사 *devoir*, 의사전달 동사(verbe de communication) *prétendre*를 증거성 표지(marqueur évidentiel)로 분석한다. 그 뒤를 이어 1994년 *Langue Française* 102호에서는 인식적 *devoir*(Dendale 1994), 인식적 *pouvoir*(Tasmowski & Dendale 1994), 조건법과 복합 과거(passé composé)(Guentchéva 1994), *il paraît que*(Nølke 1994) 등 보다 다양한 어휘와 표현이 증거성 표지로 분류되었다.

이후 프랑스어 증거성 연구는 개별 어휘·형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증거성에 관한 연구는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개별 어휘·형태의 의미 영역과 정보 출처 표시 의미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프랑스어의 유형적 특징과 관련 있다. Barbet & Saussure(2012:3)에 따르면 프랑스어는 증거성이 문법적으로 체계화된 언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리아나어, 투유카어와 같이 증거성이 문법화된 언어에서는 증거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지가 반드시 문장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어에서 정보 출처 표시는 문장 성립

을 위한 필수 문법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화자는 자신의 발화 목적에 맞춰 발화내용의 정보가 어떻게 획득되었는지를 추가적으로 표현하며, 이는 오로지 화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또한 프랑스어에는 증거성만을 나타내는 문법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경우 ‘-더-’, ‘-겠-’, ‘-대’ 등 발화 상에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만을 표현하는 접사가 존재한다. 반면에 프랑스어의 경우 양태, 시제 등 기존에 타 문법 범주로 분류되었던 형태들이 사용되거나 어휘적 방법을 통해 정보 출처 표시의 의미를 전달한다. 이러한 까닭에 프랑스어 증거성은 의미·화용론적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며,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닌 어휘 또는 형태가 발화내용의 출처를 밝히는 의미를 기본 의미 (sens premier) 또는 부차적 의미로 지니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심을 이룬다. 이와 같은 프랑스어 증거성의 유형적 특징을 종합해보자면 프랑스어는 Lazard(2001)가 제시한 증거성의 문법화에 따른 언어 유형 분류 (2.2.1.) 중 ‘증거성의 문법화가 진행되지 않은 언어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어 증거성 표지에 관한 연구는 Willett(1988)이 제시했던 증거성 유형 분류 기준(2.3.1.)을 주로 채택하여 증거성 표지들을 분류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문법적 형태로서의 직접증거성 표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경우에는 어휘적 표현을 통해 정보를 직접 획득하였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간접증거성 유형의 경우 문법적 표현을 포함하여 많은 어휘와 형태들이 증거성 표지로 분류되었다. 프랑스어 간접증거성 표지는 다시 추론증거성과 보고증거성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증거성 유형 내에서 더 세부적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프랑스어 추론증거성 표지는 추리와 추정의 구분 없이 두 출처 유형 모두를 포괄하며, 마찬가지로 보고증거성 표지 역시 전문 증거 유형의 출처와 인용 증거 유형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성 표지에 관한 논의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다.

3.2. 프랑스어 증거성 표지에 관한 논의

지금까지 선행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프랑스어 증거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어에서 정보 출처 표시의 의미를 실현하는 표지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이러한 표지들이 증거성 표지로서 기능하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아래 [표 5]는 프랑스어 증거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다룬 어휘와 형태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프랑스어 증거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다룬 어휘·형태

연구 대상		선행 연구
문 법 적 표 현	인식적 조건법 (conditionnel épistémique)	Abouda 2001, Bourova & Dendale 2013, Coltier & Dendale 2004, Dendale 1991, 1993, 2001b, 2018, Dendale & Van Bogaert 2012, Guentchéva 1994, Kronning 2002, 2003, 2012, 2018
	<i>devoir</i> ⁴⁾	Barbet 2012, Dendale 1991, 1994, Dendale & Van Bogaert 2007, Kronning 1990, 1996, 2001, 2003, Rossari et al. 2007, Saussure 2012, Veters 2012
	<i>pouvoir</i>	Barbet 2012, Tasmowski et Dendale 1994, Saussure 2012, Veters 2012
	추측의 미래 (futur conjecture)	Bellahsène 2007, Caudal 2012, Dendale 2001a, Saussure 2012, Squartini 2001, Vet & Kampers-Manhe 2001

어휘적 표현	<i>voir</i>	Grossmann et Tutin 2010
	<i>je trouve que</i>	Dendale & Van Bogaert 2007
	<i>je pense que</i>	Dendale & Van Bogaert 2007
	<i>visiblement</i>	Dendale & Tasmowski 1994, Dendale, Vanderheyden, Izquierdo 2020
	<i>À vue de nez</i>	Dendale & Vanderheyden 2018b
	<i>à vue d'oeil</i>	Dendale & Vanderheyden 2018a
	<i>il semble que</i>	Dendale & Van Bogaert 2007, Nølke 1994, Rossari 2012
	<i>il paraît que</i>	Dendale & Van Bogaert 2007, Nølke 1994, Rossari 2012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어에서 증거성으로 다루어진 표지들 중 다수는 어휘적 표현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어 문법 체계가 증거성을 문장 구성의 필수적인 문법요소로 지니지 않아 문법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발화내용이 어떤 출처로부터 나왔는지를 밝히기 위해 ‘보다’, ‘듣다’, ‘생각하다’ 등 출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증거성 의미를 화용적으로 파생된 의미 효과로 지니는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발화 상에 표시한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어에서 증거성이 문법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와 어휘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4) [표 5]에서 제시되는 *devoir*와 *pouvoir*는 발화내용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양태 조동사이며, 본 논문에서는 위 두 동사를 어휘적 표현이 아닌 문법적 표현으로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조동사로서 *devoir*와 *pouvoir*는 본래의 어휘적 의미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상실하고 발화 상에서 양태를 표현하는 문법적 기능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Vetters 2012:37~38).

3.2.1. 프랑스어의 문법적 증거성 표지

이 절에서는 프랑스어의 문법적 증거성 표지로 분류되는 ‘인식적 조건법’, ‘devoir의 인식적 용법’, ‘pouvoir의 인식적 용법’, ‘추측의 미래’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프랑스어 증거성 연구에서 가장 자주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인식적 조건법(conditionnel épistémique)**이다. 인식적 조건법은 발화내용 정보가 화자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전달받은 것임을 가리킨다. 아래 예문을 보자.

(13) Il y *aurait* des dizaines de victimes.

(13)에서 인식적 조건법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발화내용이 화자 자신이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나왔음을 나타낸다. 인식적 조건법에 기존에 부여되었던 불확실성의 의미와 책임회피의 의미는 이러한 증거성 의미로부터 파생된 화용적 결과로 설명된다.

차용된 정보의 조건법(conditionnel de l'information d'emprunt)(Martin 1992:149), 소문의 조건법(conditionnel de la rumeur)(Togoby 1982:388), 신문의 조건법(conditionnel journalistique)(Abouda 2001:278) 등으로 불리는 인식적 조건법은 발화내용이 불확실함을 표명하고, 나아가 발화내용에 대한 화자의 책임 회피(non prise en charge)를 표현하는 인식 양태 표지로 분석되곤 하였다. Dendale(1993:1731~74)에 의하면 증거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인식적 조건법이 지닌 이러한 의미는 발화내용을 화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차적 의미이다. Kronning(2018:74)은 인식적 조건법이 굴절 접미사라는 형태적 특징을 가지므로 프랑스어의 문법적 증거성 표지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Aikhenvald(2007:213)는 인식적 조건법은 화자의 책임회피를 나타내며, 보고증거성 의미는 이 형태의 인식 양태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 효과로서 증거성 전략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조동사 *devoir*와 *pouvoir*의 인식적 용법 또한 자주 증거성 표지로 논의된다. 발화내용의 확실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인식 양태 표지로서 *devoir*는 개연성(probabilité)의 의미를(Sueur 1975:6), *pouvoir*는 가능성(possibilité)의 의미를 지닌다(Tasmowski & Dendale 1994:44). Dendale(1994), Tasmowski & Dendale(1994)은 *devoir*와 *pouvoir*의 인식적 용법을 추론증거 유형에 해당하는 증거성 표지로 다룬다.

(14) Les commandos de l'île Pebble n'*ont* pas *dû* détruire tous les bombardiers Pucara, car ce seront les premiers avions argentins à fondre sur la flotte de débarquement.

(15) — Tiens, voilà qui est bizarre, Paul n'est pas là.

— Il *peut* être malade.

(14)에서 화자는 접속사 *car*가 이끄는 내용을 토대로 페블 섬 특공대가 Pucara 폭격기를 전부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주절의 내용을 추론하였으며, 이를 *devoir(ont dû)*를 사용해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15)에서 Paul의 부재를 대화자로부터 전해 들은 화자는 그가 아플 것이라 추론하며 이러한 사실이 자신이 생각해냈음을 *pouvoir(peut)*를 통해 나타낸다.

*devoir*와 *pouvoir*의 의미 차이 또한 추론 과정의 차이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Tasmowski & Dendale 1994:47). 화자는 발화 순간에 몇 가지 전제들을 근거로 잠정적인 다수의 결론을 추론해내며 이 중 발화할 하나의 결론을 선택하고 나머지 결론들을 배제한다면 *devoir*를, 선택되지 않은 결론 또한 잠재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류할 때 *pouvoir*를 선택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반대로 추론증거성 의미가 *pouvoir*의 의미 내용(*sémantisme*)이 아닌 단지 문맥에 따라 화용적으로 파생된 효과로 본다(Barbet 2012, Saussure 2012).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프랑스어 시제(*temps verbal*) 또한 증거성 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 동사의 시제가 명제가 나타내는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지시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발화내용 정보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추측의 미래(*futur conjecture*)**(Wilmet 1997:57)라 불리는 미래의 용법은 *devoir*와 함께 추론증거성 표지의 일종으로 분석된다(Bellahsène 2007, Squartini 2001, Vet & Kampers-Manhe 2001).

(16) Notre ami est absent: il ***aura*** encore sa migraine.

(16)의 화자는 친구의 부재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고 발화내용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il est encore sa migraine*). 화자는 미래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자의 친구가 두통으로 인해 결석한 것은 화자의 발화 순간 또는 이보다 이전의 일이다. 따라서 이때의 미래시제는 화자가 발화내용 정보를 추론하였음을 가리키는 표지로 사용되었으며, 추론의 결과인 발화내용은 개연성의 양태 의미가 부여된다.

3.2.2. 프랑스어의 어휘적 증거성 표지

다음으로 프랑스어에서 어휘적 방법으로 증거성의 의미가 실현되는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자. 동사(*verbe*), 부사(*adverbe*), 이외에 기타 어휘적 표현들이 선행 연구에서 증거성 표지로 분류되었다.

먼저 동사의 경우 *voir*(Grossmann & Tutin 2010)와 *trouver*, *penser*(Dendale & Van Bogaert 2007) 등이 어휘적 증거성 표지로 분석되었다.

(17) Je *vois* que Paul part.

(18) Je *trouve* que c'est un beau film.

(19) Je *pense* que c'est un beau film.

(17)에서 화자는 지각 동사 *voir(a vu)*를 통해 자신이 발화내용을 목격하였음을 나타낸다. (18), (19)에서 사용된 *trouver*, *penser*는 모두 주어의 의견을 표현하는 동사이다. Dendale & Van Bogaert(2007)는 *trouver*와 *penser*가 서로 다른 유형의 출처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trouver*로 제시하는 발화내용은 화자의 지각과 같은 직접증거에 해당한다(Dendale & Van Bogaert 2007:73). (18)의 화자는 *trouver*를 통해 해당 영화를 자신이 직접 보았음을 알린다. 반대로 (19)에서 *penser*는 화자가 자신이 직접 영화를 보지 않은 상황, 다시 말해 간접증거만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Dendale & Van Bogaert 2007:73). 두 동사의 이러한 차이는 아래 예문과 같이 특수한 맥락에서 두 동사 중 하나만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 a. *Je *trouve* qu'il fera beau demain.

b. Je *pense* qu'il fera beau demain.

(21) *Je *pense* que Jean est de retour.(71)

(20)에서 화자가 전달하는 내용(내일 날씨가 좋을 것이다)은 미래의 사실로 화자가 직접 목격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20a)와 같

이 *trouwer*는 쓰일 수 없으나 (20b)의 *penser*는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다(Dendale & Van Bogaert 2007:74). 반대로 화자가 Jean이 돌아와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21)과 같이 *penser*를 사용할 수 없다(Dendale & Van Bogaert 2007:71).

다음으로 부사가 발화내용의 출처를 가리키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다. ***visiblement***은 ‘visible > vis-’의 시지각을 가리키는 어휘적 기반 (base lexicale)을 토대로 형성된 부사이다(Dendale, Vanderheyden & Izquierdo 2020:2).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Dendale(1991:52)과 Dendale & Tasmowski(1994:5)는 *visiblement*을 화자의 시각적 확인을 정보의 출처로 하는 지각 증거성 표지로 분류한다.

(22) Épuisé, ***visiblement*** énervé, Alexandre Haig a trébuché sur la marche du 10 Downing Street.

(22)의 화자는 Alexandre Haig가 무기력한 상태임을 눈으로 확인하였고 *visiblement*을 통해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을 표시한다.

그러나 Dendale, Vanderheyden & Izquierdo(2020)은 *visiblement*이 지각증거성 표지가 아닌 시각 증거를 근거로 추론된 결론을 출처로 하는 추론증거성 표지로 분석한다. 다시 말해 *visiblement*을 사용한 화자가 지각한 것은 발화내용이 아닌 언어 외적 요소(élément extralinguistique)이며, 화자는 이로부터 발화내용에 해당하는 결론을 추론하였다는 것이다(Dendale, Vanderheyden & Izquierdo 2020:16). (26)에서 *visiblement*이 작용하는 명제 내용은 화자의 지각을 토대로 추론된 결과에 해당한다.

(23) Nous sommes plusieurs autour de la table, sur cette image photographique. C’est la fin du repas, ***visiblement***. Nous en sommes au café, au cigare des messieurs.

(23)에서 화자는 사진에서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눈으로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식사가 끝났음을 추론하였다. 이처럼 *visiblement*의 어원이 시지각과 관련이 있을지라도 증거성 표지로서 *visiblement*이 가리키는 출처의 유형은 추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à vue de nez*(Dendale & Vanderheyden 2018b), *à vue d'oeil*(Dendale & Vanderheyden 2018a)는 추론을 정보 출처로 하는 표지로 분류되었다.

(24) *À vue de nez*, aucun des trois coups n'avait manqué son but. Il était tout ce qu'il y a de plus mort.

(25) *À vue d'oeil* le paquet contient environ 3g d'une poudre blanche un peu caillouteuse.

Dendale & Vanderheyden(2018b)에 따르면 *À vue de nez*는 결과로부터 원인이 되는 전제조건을 추론하는 가추법(abduction) 형태의 추론을 나타낸다. (24)에서 화자는 표적이 된 사람 모두가 죽었다는 사실로부터 그 (il)의 총격이 모두 빛나가지 않았음을 추론한다. 한편 Dendale & Vanderheyden(2018b:17)은 '추산(estimation)'을 추론증거성의 새로운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À vue d'oeil*이 추산을 나타내는 추론증거성 표지라고 주장한다. 꾸러미 안 내용물의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화자는 (25)와 같이 *à vue d'oeil*를 사용해 이 내용이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닌 추론한 것임을 표현한다.

또한 프랑스어에는 비인칭 구문 형태가 증거성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Nølke(1994)는 *sembler*의 비인칭 구문 '*il semble que*'를 화자가 추론 작용을 통해 정보를 생성하는 추론증거성 표지로, *paraître*의 비인칭 구문 '*il paraît que*'를 소문을 정보 출처로 하는 증거성 표지라고 주장한다.

(26) *Il semble que* Marie est malade.

(27) *Il paraît que* Marie est malade.

(26)과 (27)은 모두 Marie가 아프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이 둘의 차이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는지와 관련이 있다(이희영 2009:313~314). *sembler*는 화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반면에 *paraître*에서는 주관성과 관련된 요소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paraître*가 사용된 (26)은 인용화법(*on dit que*)을 사용한 (26')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반면 (27)의 *sembler*는 불가능하다(Nølke 1994:85). 반대로 *sembler*의 경우 (27')와 같이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표현(*J'ai l'impression que*)으로 환언할 수 있으나 (26)의 *paraître*는 환언할 수 없다(Nølke 1994:85).

(26') *On dit que* Marie est malade.

(27') *J'ai l'impression que* Marie est malade.

한편 *il paraît que*가 가리키는 증거성 의미가 보고증거성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연구도 존재한다. Rossari(2012:74)는 *paraître*를 반-증거성 표지(anti-marqueur évidentiel)로 규정한다. Rossari(2012:80)에 따르면 *paraître*가 정보의 출처가 아닌 출처가 미결정(indétermination de source)된 상태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paraître*는 화자가 정보를 획득한 방법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화자가 정보의 출처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도 지니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28) Paul *paraît* pâle.

(29) *Il paraît que* Paul est pâle.

(28)과 같이 *paraître*가 온전한 주어와 함께 쓰일 때 발화내용 정보(*Paul est pâle*)는 화자가 목격한 사실을 가리킨다. Rossari(2012:79)에 따르면 (29)의 발화내용 또한 시각을 통해 확인된 정보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시각의 주체인 실제 주어가 부재하며, 비인칭 주어(*il*)를 사용하여 출처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표시한다. 만약 화자가 발화내용을 책임질 주체, 즉 목격한 주체를 알고 있다면 (30)과 같이 간접 목적 보어 대명사(*me*)를 사용하여 이를 명시할 수 있다(Rossari 2012:79).

(30) *Il me paraît que Paul est pâle.*

이처럼 *paraître*는 정보를 불특정한 출처 화자로부터 전달받았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화자가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의 출처 자체를 미결정된 상태로 유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paraître*의 증거성 가치는 단지 이러한 미결정의 가치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해석에 해당한다(Rossari 2012:80).

이처럼 다양한 어휘적 표현들이 정보 출처 표시 개념과 관련하여 증거성 표지로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Dendale & Van Bogaert(2007:84)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러한 ‘어휘적 증거성 표지’들은 ‘문법적 증거성 표지’와 의미적 계열 관계에 위치하며 화자의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증거성 표지 모두가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2.2.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문법적 표현에 해당하는 조동사 *devoir*, *pouvoir*와 미래, 조건법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4. 프랑스어 증거성 표지 분석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되었던 프랑스어 증거성 연구에서 증거성 표지로 분류되었던 표현들이 실제 발화 상에서 정보의 출처 또는 획득 방법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어 증거성 표지들은 증거성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 발화내용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판단을 설명하는 인식 양태 표지로 분석되었다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연구 방향은 범언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어 동사 *moeten*은 화자의 높은 신뢰도 정도를 나타내는 양태 표지와 간접 증거성 표지로 사용될 수 있으며(De Haan 1999:2), 한국어 선어말어미 ‘-겠-’은 이전에 인식 양태 범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추론증거성(송재목 2007, 정인아 2010, 정경미 2016) 표지로 규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어의 인식 양태 표지에 대한 증거성 범주로의 재분류 시도가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4.1. *devoir*와 *pouvoir*

4.1.1. *devoir*의 인식적 용법

*devoir*는 프랑스어에서 중의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동사로 실사(substantif)를 동반하며 “지불해야 하다(*être tenu de payer*)”, “빚지고 있다(*être redevable de*)”는 의미를 표현하는 본동사로서의 *devoir*와 부정법과 함께 조동사로 사용되는 *devoir*로 구분할 수 있다(Huot 1974:13). *Petit Robert*(2010)에서는 조동사 *devoir*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

고 있다.

[표 6] *devoir*의 조동사적 의미(Robert 2010:725)

<i>devoir</i> 의 의미	예문
(1) Être dans l'obligation de	Il doit terminer ce travail ce soir
(2) Être conduit nécessairement à.	Il devait mourir deux jours plus tard
(3) Avoir l'intention de	Nous devions l'emmener avec nous, mais il est tombé malade
(4) Marquant la vraisemblance, la probabilité, l'hypothèse.	Il doit être grand maintenant et aller à l'école
(5) Quand même, quand bien même	Dussé-je y consacrer ma fortune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3번과 문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5번을 제외한 양태 동사로서 *devoir*의 의미는 크게 ‘의무(obligation)’, ‘필연성(nécessité)’, ‘개연성(probabilité)’으로 요약할 수 있다. *devoir*의 의미는 이러한 세 개의 의미 핵(noyau sémantique)을 중심으로 상황과 문맥에 따라 필연성(nécessité), 의무(obligation), 명령(ordre), 제안(suggestion), 비난(reproche), 유감(regret), 금지(interdiction), 개연성(probabilité), 필진성(vraisemblance) 등 다양한 의미 효과를 나타낸다(Kronning 1996: 16~18).

*devoir*의 분석에서 이 동사의 의미적 다가성(plurivocité sémantique)을 분류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존재하는데, 크게는 *devoir*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전통적 연구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무적 용법(*devoir déontique*, 이하 *devoir_D*)과 인식적 용법(*devoir épistémique*, 이하 *devoir_E*)으로 분류하는 것이다(Dendale 1994:24).

(31) Tu *dois* faire tes devoirs tout de suite.

(32) Les troupes d'infanterie de marine, qui depuis un mois vivent à

toute allure, *doivent* commencer à fatiguer.

(31)에서 *devoir*는 대화자에게 일련의 행동을 강제한다. 이처럼 *devoir*가 ‘행위의 의무·필연성’을 나타내는 용법을 *devoir*의 ‘의무적 용법’이라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룬 *devoir*의 ‘인식적 용법’은 발화내용에 대한 화자의 상당한 수준의 신뢰도, 즉 ‘개연성(probabilité)’을 표현한다. (32)에서 화자는 해병대 부대가 지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한 달 전부터 전력으로 생활하였다)들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로 믿고 있음을 *devoir*를 통해 나타낸다.

이처럼 Dendale(1994:25~26)은 *devoir_E*가 추론을 통한 정보의 창조 작업(*opération de création d’information*)을 나타내는 표지로 정의하며, *devoir_E*의 양태적 의미는 *devoir_E*의 기본 가치가 아니라 증거성의 의미로부터 파생된 가치에 해당한다고 한다. Dendale(1991:258~259)은 추론 작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추론은 화자를 통해 실행되는 정보의 창조 작업으로, 확인되거나 알려진, 또는 추론된 증거에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그 기반을 두며, 논리적 혹은 다른 사유를 통해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 작업⁵⁾.

위의 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추론의 특징은 (i) 정보를 만드는 주체가 화자라는 것, (ii) 추론을 위해서는 사전 정보, 즉 전제(*prémisse*)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iii) 추론을 통한 결론은 하나로 수렴된다는 것

5) L’inférence est une opération de création d’information effectuée par le locuteur. C’est une opération qui se base explicitement ou implicitement sur des indices constatés, connus ou inférés et qui aboutit à une conclusion via un raisonnement, logique ou autre(Dendale 1991:258~259).

이다.

그렇다면 *devoir_E*가 지시하는 추론 방법은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가? Dendale(1994:27)에 의하면 *devoir_E*가 나타내는 추론 과정은 아래 세 단계로 구성된다.

- (a) 언어 외적 상황에 따른 대전제와 소전제의 생성과 활성화
- (b) 이 전제들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잠재적 결론의 추론
- (c) 다른 전제들을 기반으로 가장 유효한 하나의 결론 선택

특정 상황이나 사건과 대면한 화자는 이를 해석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들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전제들을 통해 화자는 위의 상황에 대한 결론들을 도출하게 되며, 이후 상황적 맥락과 보충적 정보들을 바탕으로 위의 결론들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론만을 선택하여 발화한다. 예를 들어 화자가 Caroline이 결근한 상황에 관해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말한다고 하자.

(33) Caroline n'est pas au travail, elle doit être malade.

(33)에서 '*elle doit être malade*' 부분은 위 (a)~(c)의 추론 과정을 거쳐 생성된 유일한 결론이다. 이 추론에 이르기 위해 먼저 화자는 Caroline이 일하러 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여러 전제들을 가정해보게 된다.

- (33') a. Si on n'est pas au travail, [c'est parce qu'on est malade.
b. Si on n'est pas au travail, [c'est parce qu'on est en vacances.
c. Si on n'est pas au travail, [c'est parce qu'on s'est levé tard.

[...]

이어서 이 전제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잠재적 결론들을 추론한다.

(33") a. Si on n'est pas au travail, [c'est parce qu']on est malade.

Caroline n'est pas au travail.

∴ *Elle être malade.*

b. Si on n'est pas au travail, [c'est parce qu']on est en vacances.

Caroline n'est pas au travail.

∴ *Elle être en vacances.*

c. Si on n'est pas au travail, [c'est parce qu']on s'est levé tard.

Caroline n'est pas au travail.

∴ *Elle s'être levé tard.*

[...]

이렇게 도출된 결론들에 대해서 화자는 Caroline의 결근과 관련된 정보들을 동원해 위 결론들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후 가장 최선의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결론을 제거한다. 예컨대 화자가 Caroline의 휴가를 미리 보고받지 않았다면 (33"b)의 결론은 폐기된다. 그녀가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다면 (33"c)의 결론 역시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위의 세 단계의 추론 과정을 거쳐 화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론에 이르며 이를 *devoir_E*를 사용해 표시한다.

(33) Caroline n'est pas au travail, elle **doit** être malade.

추론을 표시하는 *devoir_E*는 직접증거성, 보고증거성 등 다른 유형의 증

거성 표지와 대립된다. 아래 예문에서 *devoir_E*는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전해 들었음을 표현하는 보고증거성 표지인 인식적 조건법과 대립한다.

(34) a. Tiens on sonne à la porte. Ça *doit* être le facteur.

b. Tiens on sonne à la porte. ?Ce *serait* le facteur.

(34a), (34b)에서 화자가 우체부가 방문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면 발화내용(*cela être le facteur*)은 초인종 소리와 함께 몇 가지 근거를 통해 화자가 추론한 정보가 될 것이다. 실제로 초인종이 울리고 발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순간은 화자가 다른 이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의 차용(*emprunt*)을 나타내는 조건법(34b)보다 *devoir_E*를 사용한 (34a)가 더 자연스러우며 화자는 타인을 출처로 하는 조건법(34b)보다 자신을 출처로 하는 *devoir_E*(34a)를 사용할 때 발화내용의 진릿값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진다. 이처럼 *devoir_E*는 화자가 추론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정보를 획득함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Dendale 1994:37~39).

마찬가지로 *devoir_E*는 화자가 지각을 통해 정보를 직접 획득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35)의 발화내용(나의 어머니시다)은 화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결과이며, 따라서 발화내용이 추론의 결과임을 표시하는 *devoir_E*와 함께 사용되기 어렵다.

(35) ?*Ça *doit* être ma mère. Je l'avais immédiatement vue et reconnue.

지금까지 추론증거성 표지로서 *devoir*의 인식적 용법에 대해 살펴보았

다. *devoir_E*는 “전제의 생성”, “잠재적 결론 추론”, “결론의 선택”의 세 단계 추론 과정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였음을 발화 상에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추론 증거성 표지로서 *devoir_E*는 발화내용의 출처가 추론이 아닌 다른 경우에 사용이 부적절하다.

4.1.2. *pouvoir*의 인식적 용법

pouvoir 또한 *devoir*와 같이 조동사로 사용될 때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Bon usage*(1980:751)에 따르면 조동사 *pouvoir*는 ‘개연성 (probabilité)’, ‘근사치 (approximation)’, ‘허용된 행위 (action permise)’, ‘우연성 (éventualité)’ 등을 표현한다. Sueur(1975:7)는 양태 동사 *pouvoir*를 근원적 용법 (*pouvoir radical*)과 인식적 용법 (*pouvoir épistémique*, 이하 *pouvoir_E*)으로 구분한다. *pouvoir*의 근원적 용법은 다시 (36)에서 처럼 법, 도덕 등 규범을 기준으로 행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허용 (permission)’과 (37)과 같이 주어의 특성과 자질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 (capacité)’, (38)의 *pouvoir*처럼 물리적·실제적 조건에 따른 가능성을 표현하는 ‘물리적 가능성 (possibilité matérielle)’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39)의 *pouvoir*는 인식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사실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가능성’ 또는 ‘우연성 (éventualité)’을 표현하는 의미만을 나타낸다.

(36) Tu *peux* prendre un bonbon, [puisque tu as été sage].

(37) Paul *peut* venir à pied.[C’est un bon marcheur.]

(38) Je *peux* venir en voiture si la route est déneigée.

(39) Luc ne *peut* pas être malade.

*devoir*의 인식적 용법과 함께 *pouvoir*의 인식적 용법(*pouvoir épistémique*) 또한 추론증거성 표지로 분류되곤 한다. Tasmowski & Dendale(1994)은 *devoir_E*가 보여주는 추론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pouvoir_E*를 추론증거 유형에 해당하는 증거성 표지로 다룬다. 아래 예문을 보자.

(40) Où est Pierre ?

— Je ne sais pas, je ne l’ai pas vu. Il *peut* être dans sa chambre, il *peut* être au jardin, ou alors, il est dans la cave.

“Pierre가 어디 있나”는 질문을 들은 화자는 Pierre의 위치를 발화 순간 이전에 알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했다. 따라서 *pouvoir_E*를 통해 전달된 Pierre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화자가 발화 상황과 자신이 지닌 몇 가지 정보를 통해 추론한 사실이다. 이렇듯 발화내용이 화자의 추론을 통해 획득되었다는 점은 *devoir_E*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추론된 잠재적 결론 중 가장 유효한 결론 하나만을 선택하는 *devoir_E*와는 달리 *pouvoir_E*가 도입하는 결론은 단지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40)에서 화자는 *pouvoir_E*를 통해 세 개의 잠재적 결론을 제시한다. Tasmowski & Dendale(1994:46~47)에 따르면, *pouvoir_E*는 다음과 같은 추론 과정을 거쳐 정보를 생성한다.

- (a) 언어 외적 상황을 바탕으로 전제의 생성
- (b) 전제로부터 결론 추론
- (c) 다른 정보를 통해 결론의 실현 가능성 평가

추론 과정 중 1, 2단계의 경우 *devoir_E*와 *pouvoir_E*가 동일한 과정을 따른

다. 이 두 표지가 대립되는 과정은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devoir_E*는 화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결론 외에 나머지 잠재적 결론을 배제하는 반면, *pouvoir_E*는 화자가 결정한 결론 외에도 경쟁적 결론들의 존재를 함축하며 어떠한 결론도 절대적인 것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Tasmowski & Dendale 1994:47). *pouvoir_E*의 또 다른 예를 보자.

(41) Abdoul *peut* être Koweitien

(41') Abdoul *peut* être Koweitien (ou Saoudien, ou Yéménite, ou Égyptien...)

Abdoul의 국적에 대해 말하고 있는 화자는 위의 (a)~(c)의 과정을 거쳐 (41)의 결론(Abdoul est Koweitien)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devoir_E*의 결론과는 달리 (41')과 같이 추론 과정에서 도출된 잠재적 결론들을 모두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pouvoir_E*는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추론 가능한 다른 결론들에 대해 개방적임을 나타내며, 이러한 증거성의 의미로부터 우연성, 가능성의 의미가 파생된다.

*devoir_E*와 *pouvoir_E*의 차이는 *ou*로 연결된 등위구문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42) Ça *doit* être Jean ou Pierre.

(43) Ça *peut* être Jean ou Pierre.

*devoir_E*가 사용된 (42)은 *ou*로 연결된 두 개의 결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c'est Jean ou Pierre'가 하나의 결론에 해당한다. 반면에 *pouvoir_E*가 사용된 (43)의 경우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하다. 이는 아래와 같이 두 결론을 분리하는 것이 *pouvoir_E*는 가능하나 *devoir_E*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42') *Ça doit être Jean et/ou ça doit être Pierre.

(43') Ça peut être Jean et/ou ça peut être Pierre.

따라서 (44)와 같이 화자가 두 개 이상의 결론을 모두 채택하는 경우에 $devoir_E$ 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pouvoir_E$ 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4) a. *Ça doit être Jean, mais ça doit aussi être Pierre.

b. Ça peut être Jean mais ça peut aussi être Pierre.

이를 통해 $pouvoir_E$ 는 다수의 상반되는 결론들이 병치되는 것을 허용하나 $devoir_E$ 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pouvoir_E$ 가 지시하는 추론 과정은 전제를 생성하고 결론을 추론하며 이 결론들을 평가하는 과정까지는 $devoir_E$ 와 동일하다. 그러나 결론의 평가 후 최종 발화내용을 선택하는 데 있어 $devoir_E$ 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론을 선택하는 반면 $pouvoir_E$ 는 암시적으로 선택되지 않은 결론들에 대해서도 개방적임을 나타낸다는 차이가 있다.

4.1.3. $devoir_E$ 와 $pouvoir_E$ 는 증거성 표지인가

지금까지 $devoir_E$ 와 $pouvoir_E$ 가 화자의 추론을 발화내용의 출처로 표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Dendale(1991, 1994)과 Taswmoski & Dendale(1994)과 같이 이 두 양태 동사들을 추론증거성 표지로 분류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Aikhenvald(2004:365)가 주장한 바와 같이 증거성 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증거성 의미가 이 표지들의 부차적 의미가 아닌 중심 의미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devoir_E*와 *pouvoir_E*의 증거성 의미가 이 동사들의 기본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devoir_E*를 증거성 표지로 보는 주장은 *devoir_E*의 증거성 가치로부터 인식 양태 가치가 파생되었으며, 작용된 추론의 특성에 따라 *devoir_E*의 양태 가치가 변한다고 설명한다. 아래의 예문에서 *devoir_E*는 각각 필연성(45), (준)확실성(46), 개연성(47)의 가치를 발화에 부여한다.

(45) Cette figure *doit* être un cercle puisque la distance de chaque point de la circonférence au centre est partout identique.

(46) Cette jeune femme *a dû* avoir des rapports sexuels avec un séropositif ou avoir été en contact avec du sang contaminé puisqu'elle est séropositive.

(47) Oui, l'enfer *doit* être ainsi : des rues à enseignes et pas moyen de s'expliquer.

(45)에서 추론의 대전제는 원에 대한 수학적 정의(중심으로부터 각 점 사이의 거리가 모두 같은 도형을 원이라 한다)로 이를 기반으로 한 연역적 추론의 결과물인 발화내용(이 도형은 원이다)은 논리적으로 참이며 필연성을 띠게 된다. (46)은 병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해당 질병의 감염경로는 발화내용에 언급된 것에 한정되므로 이에 따르는 (준)확실성이 발화에 부여된다. (47)에서 지옥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거나 확인이 가능한 개념이 아니며 이에 관한 개인의 생각은 그 자체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단지 개연적 가치만을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devoir_E*가 나타내는 양태 가치는 그 신뢰성 정도가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변성을 띠기 때문에 부차적 의미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위의 세 예문에서 증거성 가치는 모두 ‘화자의 추론을 통한 정보 획득’이므로 동일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Dendale(1994)의 주장과는 달리 *devoir_E*의 양태 가치는 개연성만을 가리킨다고 본다. 앞서 제시된 예문 (45), (46), (47)을 다시 살펴보자. Dendale의 주장대로 (45), (46)에서 *doit*와 *a dû*는 각각 ‘필연성’, ‘(준)확실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사실은 위 예문에서 *doit*와 *a dû*가 실제로 *devoir*의 인식적 용법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 *devoir*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필연성’과 ‘확실성’의 개념은 *devoir*의 의무적 용법으로 분류되었다. Sueur(1975:6)⁶⁾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45), (46)은 양태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 또는 상태의 출처가 사람이 아닌 경우이므로 ‘필연성’의 의미를 표현하는 *devoir_D*에 속한다.

(45), (46)의 *devoir*가 행위자성(agentivité)의 부재로 인해 *devoir_D*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devoir_E*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Vettes(2012:36)에 따르면 (45), (46), (47)과 같은 예문에서 *devoir*의 양태 가치는 행위자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존재 양태(modalité d’être)’⁷⁾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45), (46)과 (47)의 용법을 구분하여 다룬다. Vettes(2012:41)는 (45), (46)의 *devoir*를 확실성을

6) Sueur(1975)는 양태 동사 *devoir*의 용법을 의무·필연성을 나타내는 의무적 용법(*devoir déontique*)과 개연성을 나타내는 인식적 용법(*devoir épistémique*)으로 구분하며, *devoir*의 의무적 용법을 행위 또는 상태를 강제하는 출처에 따라 사람일 때 의무(*obligation*), 그렇지 않은 때를 필연성(*nécessité*)로 분류한다.

7) Vettes(2012:35~36)는 행위자성 여부를 의무 양태와 인식 양태의 구분 기준으로 보며, 이를 바탕으로 의무 양태를 행위 양태(*modalité du faire*), 인식 양태를 존재 양태(*modalité de l’être*)로 명명한다.

나타내는 객관적 존재 양태(modalité d'être objective)로 분류하며, (47)에서 *devoir*는 주관적 존재 양태(modalité d'être subjective)로 개연성 또는 잠재성을 의미를 지닌다.

위의 예문에서 보여주는 분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Kronning(1996)이 주장한 *devoir*의 삼원 체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Kronning(1996:26)은 *devoir*의 용법을 기존의 의무적 용법과 인식적 용법으로 구성된 이원 체계에 진리적 용법(*devoir aléthique*, 이하 *devoir_A*)을 추가한 삼원론을 주장한다. *devoir*의 진리적 용법이란 객관적·절대적 필연성을 표현하는 용법으로, 논증에 입각한 결론 혹은 자연법칙에 따른 결과의 표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Kronning 2001:69). Kronning(1996:27)에 따르면 *devoir_A*는 *devoir_E*와 함께 '존재의 필연성'을 표현하나 진위판단이 불가능하고 단지 보여지는(non vérifiable, mais montrable) *devoir_E*와는 달리 *devoir_A*는 진위판단이 가능하며 절대적 필연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devoir_A*의 특징을 기준으로 위의 예문을 아래(45', 46', 47')와 같이 환언하였을 때, (45'), (46')은 진위판단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47')의 경우 발화내용의 참·거짓을 평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5), (46)의 *doit*와 *a dû*는 *devoir*의 인식적 용법이 아닌 진리적 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5') *Il est vrai que* cette figure *doit* être un cercle [...].

(46') *Il est vrai que* cette jeune femme *a dû* avoir des rapports sexuels avec un séropositif [...].

(47') **Il est vrai que* l'enfer *doit* être ainsi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evoir*의 인식적 용법이 지니는 양태 가치는 Dendale의 주장과 달리 문맥에 의해 변하지 않으며, 개연성의 의미를 일

정하게 나타낸다고 본다.

다음으로 *devoir_E*의 양태 가치와 증거성 가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Dendale이 주장한 바와 같이 추론 작용과 개연성 판단은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이 분명하다. 화자는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채 단지 관련된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추론한 정보에 대하여 이 정보가 완전히 확실한 사실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단지 자신이 이 정보가 자신이 판단하기에 가장 그럴듯한 결론임을 표현할 뿐이다. Charles S. Peirce가 인간의 사유를 근본적으로 ‘가추적(abductif)인 것’으로 본 것처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전제들을 바탕으로 한 추론의 결론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개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Saussure 2012:137). 이러한 까닭에 추론증거성과 인식 양태를 구분하지 않고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almer(1986:70)는 특정 체계가 증거성인지 인식 양태인지 밝히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보았으며, Van der Auwera & Plungian(1998:85~86)은 [표 7]과 같이 양태와 증거성 사이에 중첩된 지점을 추론증거성과 인식적 필연성(개연성)으로 설명한다.

[표 7] 인식 양태와 증거성의 관계(Van der Auwera & Plungian(1998:86))

필연성				
...	의무적 필연성	인식적 필연성 = 추론증거성	인용 증거성	...
			증거성	

마찬가지로 *devoir*의 인식적 용법과 관련하여 이 용법이 인식 양태 의미와 추론증거성 의미가 혼합된 표지로 보는 시도가 존재한다. Vettters(2012)는 *devoir_E*가 나타내는 추론증거성 가치와 인식양태 가치의 관계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 아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밀접하

게 연결되는 것으로 본다. 화자가 발화내용의 불확실함을 말한다면 이는 그가 이 정보를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하지 못하고 단지 추론을 통해 획득하였기 때문이며, 반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추법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은 필연성을 띠지 못하고 개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devoir_E*는 가추법적 사유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였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획득된 정보가 불확실함을 표현한다.

이처럼 *devoir_E*가 사용된 발화내용의 정보를 화자가 추론을 통해 획득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devoir_E*를 인식 양태가 아닌 추론증거성 표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어떠한 형태소가 사용된 발화내용의 정보가 추론을 통해 생성되었다는 것과 이 형태소가 발화내용의 출처가 화자의 추론임을 표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Rossari et al.(2007:7)에 따르면 추론은 발화의 해석을 위해 동원되는 ‘해석적 메커니즘(*mécanisme interprétatif*)’에 해당한다. 추론이란 화자가 발화내용을 획득할 수 있었던 방법을 포착하기 위해 활성화될 수 있는 해석적 원리에 해당하며, 아래 예문과 같이 *devoir*뿐만 아니라 *devoir*가 사용되지 않은 발화 모두 추론을 통해 도출된 결론일 수 있다.

(48) a. Marie *doit* être partie.

b. Marie *est* partie.

(48a)와 (48b)가 Marie의 차가 주차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화자가 발화한 것이라면, 두 발화내용 모두 확인된 사실로부터 추론된 결론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발화의 의미가 대립되는 층위는 증거성 의미가 아닌 화자의 확실성과 관련된 인식 양태 의미이다. 이처럼 (48a)에서 전달되는 추론증거성의 의미는 이 동사의 고유한 의미라 보기 어렵고 단

지 문맥에 기댄 화용적 해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devoir_E의 의미 내용에 추론증거성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같은 양태 동사이며 추론증거성 표지로 분류되었던 pouvoir_E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Barbet 2012, Kronning 2003).

Kronning(2003:141)은 devoir_E가 양태 표지인 이유를 pouvoir_E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한다. 먼저 아래와 같은 발화에서 devoir_E와 pouvoir_E를 대립시키는 의미는 증거성이 아닌 양태 의미이다.

(49) Marie n'est pas là. Elle **a dû** se tromper de date.

(50) Marie n'est pas là. Elle **a pu** se tromper de date.

(49)와 (50)의 발화내용은 모두 화자가 확인한 사건(Marie가 거기에 없다)을 전제로 추론한 결과(그녀가 날짜를 착각했다)에 해당한다. 증거성의 층위에서 이 두 발화는 동일한 의미 작용을 나타내며 이 층위에서 devoir_E와 pouvoir_E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에 두 동사의 의미가 대립하는 의미 층위는 인식 양태 층위로, 개연성과 가능성의 대립을 통해 두 표지는 변별된다.

앞서 보았듯이 Tasmowski & Dendale(1994)은 두 동사의 의미 차이가 추론의 세 번째 단계인 결론의 평가 및 선택 과정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Barbet(2012)는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증거성의 개념이 정보의 출처라는 의미에 한정된다면 Dendale(1994)과 Tasmowski & Dendale(1994)이 제시한 결론의 평가와 선택의 단계는 증거성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화자의 인식적 판단에 해당하는 인식 양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Barbet 2012:56~57). (49)와 (50)의 화자는 동일한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결론을 추론하였으며, 정보의 출처에 대하여 두 발화는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화자가

devoir_E와 pouvoir_E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이 화자가 자신이 추론한 결론의 진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인식 양태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devoir_E와 pouvoir_E의 추론증거성 의미가 이 동사들의 기본 의미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다. Saussure(2012:139)에 따르면 발화에서 pouvoir_E가 추론을 통해 정보를 획득함을 나타내는 의미는 이 동사의 양태 의미로부터 특정 문맥에서 화용적 보충(enrichissement pragmatique)을 통해 파생된 의미효과이다. 다음의 예문에서 *pouvoir*의 증거성 의미는 이 동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맥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Saussure 2012:140).

(51) a. Pierre *peut* être à la maison ; les lumières sont allumées.

b. Pierre *est* à la maison ; les lumières sont allumées

(51a)는 pouvoir_E가 추론증거성 표지로 사용된 것을 보는 전형적인 발화 유형이다. 화자는 Pierre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고 이를 전제로 추론을 통해 그가 지금 집에 있을 것이라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 발화에서 두 번째 발화와 함께 문맥이 제거된다면 pouvoir_E는 쉽게 이 정보가 추론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pouvoir_E를 포함하지 않은 발화(51b)와 비교할 때 두 발화는 같은 정보 출처, 다시 말해 지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 작용을 통해 발화내용 정보를 획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 경우에 두 발화의 차이는 가능성과 확실성의 양태 층위에서 포착된다. 따라서 추론증거성의 의미를 pouvoir_E의 고유한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devoir_E와 pouvoir_E를 추론증거성 표지로 분석하는 연구는 인식적 필연성과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배제적·비배제적인 결론이 존재함을 내포하

며,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 반드시 일련의 사유 과정이 필요함을 전제로 한다(Saussure 2012:140). 그러나 Saussure(2012)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전제는 자칫 모든 언어 행위가 추론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처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devoir*와 *pouvoir*의 인식적 용법이 나타내는 양태 가치는 화자가 단언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여기에 특정 상황과 맥락이 더해지며 발화내용이 추론을 통해 획득되었음을 표시하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으며, 실제로 *devoir_E*와 *pouvoir_E*가 포함된 발화는 화자의 추론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일 수 있다. 그러나 두 표지들을 비교할 때와 증거성의 중립적 형태(직설법 현재)와 둘을 비교하였을 때 추론증거성 가치는 인식 양태 가치와는 달리 식별 자질(*trait discriminant*)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devoir_E*와 *pouvoir_E*의 기본 의미는 인식 양태 가치이며, 추론증거성 가치는 인식 양태 가치를 기반으로 파생된 부차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2. 미래

4.2.1. 추측의 미래

가정의 미래(*futur de supposition*)(Mellet 1989:271), 인식적 미래(Dendale 1994:33) 등으로 불린 추측의 미래(*futur conjecture*)는 일반적으로 사실에 대한 미래의 확인(*vérification future*)의 의미로 분석되었다(Barbet & Saussure 2012:7).

Bellahsène(2007:257)은 추측의 미래가 추론의 메커니즘을 실행하며,

이때의 추론은 “화자가 현재 관찰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⁸⁾라고 주장한다. Vet & Kampers-Manhe(2001:95)는 미래시제가 명제의 진릿값이 화자의 추론으로 도출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Squartini(2001:315)는 아래의 예문에서 사용된 추측의 미래를 추론증거성 표지로 보았다.

(52) L'assassin se *sera* introduit par la fenêtre.

(52)에서 미래시제는 발화 시점 이후의 시간적 위치를 지시하지 않는다. 암살자가 창문으로 침입한 것은 발화 순간보다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제에서 미래시제는 시제의 기능이 아닌 정보가 화자의 추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임을 가리키는 추론증거성 표지로 기능한다 (Squartini 2001:315).

추측의 미래가 *devoir*의 인식적 용법이 사용되는 맥락에서 *devoir*를 대신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증거성 표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53), (54)에서 사용된 *devoir*_E는 모두 추측의 미래로 대체될 수 있다.

(53) (J'ai trouvé ce beau livre sur le bureau)

- a. Ça *doit* être le cadeau d'une admiratrice.
- b. Ce *sera* le cadeau d'une admiratrice.

(54) (Il n'est pas encore là)

- a. Il a *dû* se tromper d'heure.
- b. Il se *sera* trompé d'heure.

8) Cette relation d'inférence se fonde sur des faits observés dans le présent du locuteur(Bellasène 2007:257).

그러나 두 표지가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두 표지가 모두 수용 가능할지라도 두 표지 사이에는 미묘한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 Dendale(2001a)은 추측의 미래와 *devoir_E*의 의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추측의 미래는 ‘다소 즉각적인 가정과 설명’을 표명한다면, *devoir_E*의 추론은 보다 세심하고 더 많은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Dendale 2001a:13). 이에 따라 추측의 미래가 포함된 발화내용이 조급하고 직관적인 결론을 보여주는 반면, *devoir_E*가 포함된 발화는 정신적 과정(*processus mental*)을 거친 숙고된 결론을 표현한다. 다음 두 예를 통해 이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55) Roger n'est pas venu. Il **sera** malade ou il **aura** des ennuis.

(56) Mais il n'est plus jeune, et je suppose qu'il **doit** avoir au moins cinquante ans.

(55)에서 화자는 Roger가 오지 않는 이유를 열거할 때 추측의 미래를 사용한다. 이는 이유에 대한 화자의 추론이 즉각적이고 조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때 *devoir_E*가 사용된다면 발화내용은 4.1.2.에서 본 것처럼 열거된 두 개의 이유가 아닌 하나의 이유로 바뀌게 된다. 또한 (56)과 같이 나이 등 숫자 정보에 대한 추론 결과를 표현할 때 *devoir_E*는 문제 없이 사용되는 반면, 추측의 미래는 사용된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Dendale 2001a:3).

추측의 미래의 이러한 특징은 두 표지가 표현하는 양태 의미에도 영향을 준다. 추측의 미래를 사용한 화자는 자신의 발화내용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확인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devoir_E*보다 발화내용에 대한 더 높은 정도의 신뢰도를 보이며, 발화내용의 진릿값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진다(Dendale 2001a:15). 아래 예문을 보자.

(57) [Bruit au rez-de-chaussée]

- Mari : Qu'est-ce que c'est ?
- Femme : Ce (*sera*/ *doit être) la bonne.

(57)은 아내가 남편을 위한 비밀 이벤트를 준비하던 중 1층에서 소리가 난 상황이다. 1층 소리에 대한 남편의 물음에 아내는 준비 사실을 숨기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추측의 미래를 사용한다. 남편이 1층에 내려가 소리의 원인을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devoir_E*의 사용은 추측의 미래보다 부적절하다. 한편 이것이 추측의 미래가 제시하는 결론이 *devoir_E*의 결론보다 객관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정신적 과정을 거쳐 도출되는 *devoir_E*의 결론이 객관적으로 확실할 수 있다. 추측의 미래가 표명하는 결론은 화자의 관점에서 높은 신뢰도를 드러내지만, 화자는 이러한 결론에 충분한 숙고 없이 급속도로 도달했기 때문에 실제 발화내용의 진위에 대한 확실성은 떨어진다. 반면에 *devoir_E*로 도입되는 결론은 화자가 신중히 숙고하여 추론한 결과로서 화자는 자신의 발화내용이 참인 지에 대해 주저하고 조심스러우나, 실제 발화내용은 추측의 미래를 사용한 발화보다 참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추측의 미래는 문장에서 추론증거성 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추측의 미래가 표시하는 추론 과정은 *devoir*의 인식적 용법의 추론 과정과 차이가 있으며, 두 표지가 사용된 발화내용의 의미 차이 역시 추론 과정의 차이에서부터 도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2.2. 추측의 미래는 증거성 표지인가

앞서 추측의 미래가 $devoir_E$ 와 마찬가지로 발화내용의 정보가 화자의 추론을 출처로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추측의 미래를 추론증거성 표지로 규정하는 일은 $devoir_E$ 와 $pouvoir_E$ 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문제에 해당한다. 추측의 미래를 증거성 표지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추론 과정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이 시제 용법의 의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나, 실제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Dendale(2001a)은 추측의 미래가 $devoir_E$ 와 같이 일어난 사실의 원인을 추론하였음을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제 용법이 증거성 표지는 아니라고 보았다. Dendale(2001a:12)에 따르면 추측의 미래가 나타내는 의미 내용은 전달된 정보에 대한 ‘지연된 진위 확인과 책임지기 (verification et prise en charge différées)’에 해당한다. 화자는 자신의 발화내용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참·거짓이 판별될 것이며 그전까지 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측의 미래는 인식양태 표지에 속하며 미래가 표현하는 추론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단지 간접적으로 획득된 효과이다.

Dendale & Van Bogaert(2012) 역시 추측의 미래가 나타내는 증거성 의미는 화용적으로 파생된 것으로 제시한다. Dendale & Van Bogaert(2012:19)에 따르면 미래를 사용한 발화내용은 단지 미래에 확정적으로 확인되고 책임지어질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단지 추측, 추론의 대상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추측의 미래가 지닌 추론증거성 가치는 이 시제의 의미 내용이 아닌 단지 화용적 차원에서 해석된 결과에 해당한다. 아래 예문을 통해 추측의 미래가 전달하는 증거성의 의미가 문맥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58) (J'ai trouvé ce beau livre sur le bureau)

a. Ce **sera** le cadeau d'une admiratrice.

b. C'**est** le cadeau d'une admiratrice.

미래가 사용된 (58a)와 직설법 현재가 사용된 (58b)는 모두 지각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추론적 사유의 결과이다. 화자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책을 확인한 후 상황과 보충적 정보를 더해 이 책이 팬이 준 선물일 것이라 짐작한다. 이처럼 두 발화는 증거성의 층위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위 예문에서 추측의 미래와 직설법 현재가 대립하는 지점은 화자가 발화내용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의 층위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화자가 현재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래를 선택한 것은 발화내용 정보의 출처가 자신의 추론임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닌 이 정보에 대해 완전히 확신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의 형태가 사용된 발화가 추론을 통해 획득된 결론이라는 사실과 이 형태가 이러한 추론적 사유의 존재를 언어적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은 별개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58b)의 직설법 현재 역시 추론증거성 표지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추측의 미래에 대한 위와 같은 의미 기술은 추측의 미래와 devoir_E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추측의 미래가 사용된 발화내용은 화자에게 있어 곧 확인될 사실에 해당한다. 반면에 devoir_E 의 발화내용은 화자가 동원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지은 사실이며, 화자는 이 사실이 나중에 확인될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화자는 추측의 미래가 사용된 발화내용에 devoir_E 의 발화내용보다 더 높은 정도의 신뢰도를 부여한다. 추측의 미래가 제시하는 내용은 다소 즉각적인 인상을 주고 높은 확실성을 보여주나 devoir_E 의 결론보다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이와 같은 미래시제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다(Dendale 2001a:12~16).

Saussure(2012)는 추측의 미래가 지닌 증거성 의미와 인식적 의미 모두 화용적 원리에 따라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추측의 미래 용법이 개연성의 인식적 의미를 나타낼지라도 반드시 증거성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Saussure 2012:135). 아래 예문은 신발 가게 점원인 화자가 특정 제품을 찾는 고객에게 한 대답이다. 여기서 추측의 미래는 발화내용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판단을 보여주나, 발화내용이 추론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는 해석은 배제된다.

(59) Elles *seront* sur ce présentoir là-bas.

고객의 문의를 받은 화자는 특정 진열장에 해당 제품이 있음을 확인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9)와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이때의 발화내용은 화자가 발화 시점에 지각된 정보를 기반으로 추론한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59)의 내용은 화자가 확인한 정보에 해당하며, 화자는 청자인 고객이 진열장에 가서 신발을 확인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발화에 대한 진위판단을 미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추측의 미래가 나타내는 인식적 의미가 반드시 추론적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단정할 수 없으며 추측의 미래가 나타내는 추론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추측의 미래 용법은 특정 상황과 문맥에서 화자가 지각한 정보를 근거로 발화내용을 추론하였다는 의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성 의미는 미래시제의 의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문맥에 따라 화용적으로 파생된 해석 차원의 결과물로 봐야 할 것이다. 추측의 미래가 표현하는 양태 의미에 대해 이것이 미래시제가 지닌 고유한 의미 가치인지, 이 시제의 미래성으로부터 파생된 화용

적 결과인지는 연구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서 추론의 의미는 이 시제의 의미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추측의 미래의 기본 의미를 추론증거성 가치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3. 조건법

4.3.1. 인식적 조건법(conditionnel épistémique)

조건법의 인식적 용법은 기존에 인식 양태 표지로 분류되었던 용법으로, 발화내용이 불확실함을 표명하고 나아가 발화내용에 대해 화자가 책임을 피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증거성 연구에서 인식적 조건법은 발화내용 정보가 화자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전해졌음을 표현하는 보고증거성 표지로 분류된다. Dendale(1991, 1993, 2018)은 증거성과 관련하여 인식적 조건법의 다의성 중 화자가 아닌 제 삼의 출처를 지시하는 증거성의 의미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Kronning(2002, 2003, 2018)은 인식적 조건법을 정보의 차용을 나타내는 증거성 가치와 화자의 책임회피를 나타내는 양태 가치가 혼합된 문법 표지로서 다룬다. 아래 예문을 보자.

(60) Kandahar, le dernier grand bastion taliban, *aurait* capitulé.

(61) Kandahar, le dernier grand bastion taliban, *a* capitulé.

인식적 조건법이 사용된 (60)은 발화내용(Kandahar가 항복하였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화자가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이 정보의 진위를 책임지지 않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증거성의 관점에서 (60)의 내용은 화

자가 직접 목격하거나 추론한 것이 아닌, 밝혀지지 않은 제삼자에게 전달받은 사실에 해당한다. (60)의 조건법을 (61)과 같이 직설법으로 치환한다면, 정보의 출처가 따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화자가 알고 있거나 확인한 사실이라는 의미로 변경된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인식적 조건법은 주로 신문 기사 등에서 자주 사용되었고 Abouda(2001:278)은 신문의 조건법(*conditionnel journalistique*)이라 명명하기도 하였다.

인식적 조건법의 증거성 의미가 화자가 아닌 타인을 출처로 한다는 사실은 인식적 조건법이 인용을 나타내는 표지(*d'après/selon N, dit-on, paraît-il* 등)와 대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Dendale 2018:67~68). 아래 예문 (62)에서 화자는 표현의 중복을 피하고자 인용 표지(*dit-on*) 다음에 인식적 조건법(*enverrait*)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62) Internet est aussi une jungle où peuvent évoluer, sans contrôle ni sanction, les « criminels » des temps modernes : [...]. Les trafiquants de drogue, *dit-on*, l'utilisent pour communiquer entre eux. La Mafia *enverrait* même des messages à ses agents du monde entier à partir d'ordinateurs installés en Suisse.

다음으로 보고증거성 표지로서 인식적 조건법이 지시하는 정보 출처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자. 보고증거성은 발화의 출처를 명시하는 인용(citation) 증거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전문(*ouï-dire*) 증거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인식적 조건법은 출처 화자(*locuteur source*)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는다(Dendale 2018:68). 이는 *d'après/selon N, dit-on*과 같은 인용 표지와 대립되는 특징이다.

(63) Il y *aurait* des dizaines de victimes.

(64) *Selon* Kim Darroch, Mike Pompeo a laissé entendre qu'il avait essayé, sans succès, de « vendre » un texte révisé à Donald Trump, [...].

(64)는 인용 표지 *selon*을 통해 해당 발화의 출처가 누구인지 명시하는 반면, (63)에서는 출처 화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63)에서 인식적 조건법이 제공하는 정보는 단지 이 발화내용 정보가 화자가 아닌 제3의 출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다. 인용 표지의 경우 출처 화자가 누구인지 명시(*dit-il, selon Paul...*)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하더라도 최소한 출처 화자가 불특정하다는 정보(*d'après ce qu'on dit, selon la rumeur*)를 제공한다. 그러나 인식적 조건법은 출처 화자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인식적 조건법만으로는 화자가 특정한 개인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소문을 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인식적 조건법과 인용 표지(*selon, d'après*)를 함께 사용하면 출처 화자에 대한 보충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Dendale 2018:68). 또한 Kronning(2012:91)에 따르면 (65), (66)과 같이 인용 표지와 인식적 조건법이 동시에 사용될 경우 발화내용에 대해 화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65) Selon Abdoul Karim, le chef du village, les bombes américaines *auraient* fait 200 motrs.

(66) D'après la rumeur, les chercheurs *auraient* mis à jour un artéfact, une sorte d'objet magique à ce que j'ai entendu dire.

이처럼 인식적 조건법은 인용 증거와 전문 증거 모두에서 사용 가능한

증거성 표지이다. 2.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고증거성을 갖춘 언어 대부분에서 보고증거성의 두 증거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Kronning(2018:75)은 인식적 조건법이 나타내는 이러한 증거성적 특징을 근거로 인식적 조건법이 프랑스어의 문법적 증거성 표지라고 주장한다.

4.3.2. 인식적 조건법은 증거성 표지인가

이 절에서는 인식적 조건법을 프랑스어의 증거성 표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본 *devoir*와 *pouvoir*의 인식적 용법, 추측의 미래와 마찬가지로 인식적 조건법 또한 증거성 연구 이전에는 인식 양태 표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Kronning(2003)은 *devoir_E*, *pouvoir_E*, 추측의 미래가 보여주는 인식적 양화와 인식적 조건법의 인식적 양화는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인식 양태에 대한 Kronning(2003:137~138)의 분류에 따르면 *devoir_E*, *pouvoir_E*, 추측의 미래가 속하는 인식 양태 유형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내용이 참인지, 그럴듯한 것인지 또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인식 양태에 부여되는 정의적 개념에 가깝다. Kronning(2003:137)은 이러한 유형의 인식 양태를 ‘복합적 양태화(modalisation complexe)’ 유형으로 분류한다. 반면에 인식적 조건법은 복합적 양태화와는 달리 화자가 발화내용의 진위에 관해 판단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음을 나타내며, Kronning(2003:138)은 이를 ‘영형 양태화(modalisation zéro)’라고 명명한다. 복합적 양태화 표지가 사용된 발화는 화자가 발화내용의 진릿값을 평가하고 책임지는 반면, 영형 양태화가 사용된 발화의 진위는 화자가 판단한 것이 아니며 화자는 진릿값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증거성 연구에서는 인식적 조건법

이 표현하는 ‘판단 보류’, ‘책임회피’의 의미가 보고증거성 가치에서부터 파생된 효과라고 본다.

Dendale(1993:165)에 따르면 인식적 조건법은 (i) 발화내용의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사실과 (ii) 화자가 발화내용의 진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iii) 발화내용 정보가 다른 이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사실의 세 가지 의미 자질(trait sémantique)을 지닌다. Dendale(1993:173)은 두 가지 논거에 의거하여 세 번째 의미자질을 인식적 조건법의 기본 가치로 규정한다. 그 이유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식적 조건법의 세 의미 중 증거성 의미만이 유일하게 안정적인 의미자질이라는 것이다(Dendale 1993:173). 인식적 조건법이 제시하는 불확실성과 책임회피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정보를 다른 곳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사실은 늘 변함이 없다.

(67) Ce matin la flotte britannique *aurait quitté* le port de Portsmouth. Le gourvenement britannique a déclenché ainsi le compte à rebours pour la guerre des Malouines.

(68) Je réfute fermement sa suggestion selon laquelle l'action gouvernementale *serait* influencée par des considérations électorales.

(67)에서 화자는 영국함대가 포츠머스 항을 떠났다는 정보를 인식적 조건법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영국 정부가 포클랜드 전쟁을 시작했다는 정보를 직설법으로 표현한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첫 번째 발화내용을 사실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뒤이어 나온 내용을 단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67)에서 조건법은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화자가 이 정보의 진위판단을 하기를 거부하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 반대로

(68)의 화자는 발화내용의 정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이는 그가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여기서 인식적 조건법은 책임회피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는다. 반대로 두 예문에서 발화내용 정보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사실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인식적 조건법의 불확실성의 가치와 책임회피의 가치는 상황과 문맥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 반면, 보고증거성 가치는 그렇지 않다.

다음으로 증거성 의미가 인식적 조건법의 기본 가치인 이유는 이 증거성 의미로부터 나머지 두 의미가 파생되기 때문이다(Dendale 1993:173).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가장 먼저 이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화자가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Dendale 1993:168). 이때 전달받은 정보의 진위는 화자에게 중요하지 않다. 화자는 정보의 생산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내용만을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발화내용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다시 말해 인식적 조건법이 지닌 화자의 책임회피는 증거성 의미로부터 나온 것이다. 반대로 화자는 전달받은 정보에 대해 수용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Dendale 1993:170~172).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해서 화자가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화자의 판단에 따라 발화내용에 대한 화자의 책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증거성 의미는 그대로 유지된다.

같은 맥락에서 증거성 의미로부터 발화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의 가치가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Dendale 1993:172). 발화내용 정보가 화자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정보는 화자에게 완전히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다. 확실성은 개인적 판단이다. 화자는 자신이 생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신뢰하며 수용적일 수 있으나, 만약 자신이 정보의 출처가 아니라면 이 정보에 대해 충분히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의 출처는 화자의 불확실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것이 화자의 판단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정보 출처는 단지 화자의 판단에 있어 필요한 근거 중 하나일 뿐 화자에게 출처 외에 발화내용과 관련된 다른 정보가 제공된다면 화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Dendale은 인식적 조건법의 의미 가치 중 증거성 가치만이 이 형태의 기본 가치로 주장했고, 나머지 의미들은 증거성 가치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화자의 책임회피를 인식적 조건법의 기본 가치로 보는 주장(Aboude 2001)과 인식적 조건법이 책임회피의 가치와 보고 증거성 가치가 혼합된 표지로 보는 주장(Kronning 2002, 2003, 2012, 2018) 역시 존재한다. 인식적 조건법을 보고증거성 표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식적 조건법의 또 다른 의미 가치로 제시되었던 ‘불확실성’과 ‘책임회피’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 차용’의 증거성 가치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인식적 조건법의 양태 가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인식적 조건법에 부여되는 양태 가치는 ‘불확실성’이다(Coltier & Dendale 2004:592). 그러나 *devoir_E*의 양태 가치가 개연성으로 일관된 것과는 달리 인식적 조건법의 양태 가치는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의심(*doute*)의 양태 가치 또한 표현할 수 있다(Dendale 1993:172).

(69) Selon la radio argentine, l'Invincible *aurait été* touché hier après-midi par un Exocet, ce qui est fort douteux/fort peu probable si on sait comment le porte-avions est protégé de ses escorteurs.

(69)의 화자는 인식적 조건법을 사용해 Invincible 항공모함이 Exocet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이어서 나오는 발화를 통해 이 정보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인식적 조건법은 화자가 발화내용의 진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확실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Kronning 2018:76).

(70) Beaucoup d'idioties ont été écrites sur le film *Wagner* de Tony Palmer, 1983 depuis son achèvement. {Il **durerait** 9 heures ; 2 heures ; 5 heures}. Tout cela est faux. Le film fait exactement 7 heures 46 minutes. [...] {Les producteurs **auraient** demandé à ce que le film soit brûlé}. Seule cette dernière assertion est vraie.

(70)에서 화자가 조건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내용(*Il durerait 9 heures ; 2 heures ; 5 heures / Les producteurs auraient demandé à ce que le film soit brûlé*)은 뒤이어 나오는 화자의 판단(*Tout cela est faux / cette dernière information est vraie*)에 따라 불확실성과 확실성의 양태 의미 모두를 보여준다. Kronning(2012:85)은 이러한 이유로 인식적 조건법은 고유한 인식 양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으며, 인식적 조건법의 양태 가치는 이 형태의 의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본 논문 또한 Kronning의 주장을 수용하여 인식적 조건법이 포함된 발화에 나타나는 양태 가치를 조건법의 고유 가치가 아닌 화용적 의미 효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인식적 조건법의 책임회피(non prise en charge) 가치에 대해 살펴보자. 책임회피 가치는 화자가 발화내용의 진위를 평가하기를 거부하고 발화내용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최대한으로 줄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Kronning 2012:84). 인식적 조건법을 사용한 화자는 기본적으로 발화내용의 참·거짓을 결정하지 않는다. 앞서 Dendale은 인식적 조건법이 사용된 발화내용의 진위를 화자가 결정한 예문(65), (66)을 제시하며

책임회피 가치가 인식적 조건법의 기본 가치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반면에 Abouda(2001:282)는 인식적 조건법이 사용된 발화가 표현하는 참·거짓의 의미는 간접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인식적 조건법의 책임회피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식적 조건법은 단지 발화내용에 대해 화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발화내용에 내려진 진위판단의 의미는 인식적 조건법의 고유한 의미가 아닌 문맥에 따라 파생된 의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Dendale(1993)이 제시한 예문 (67)을 다시 한번 보자.

(67) Ce matin la flotte britannique *aurait quitté* le port de Portsmouth. Le gourvenement britannique a déclenché ainsi le compte à rebours pour la guerre des Malouines.

(67)의 화자는 첫 번째 문장의 결과에 해당하는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직설법을 통해 단언하였다. Dendale에 따르면 화자는 첫 번째 문장의 진위 역시 참으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인식적 조건법의 책임회피 가치가 변하였다. 그러나 Abouda(2001)는 (67)에서 인식적 조건법은 여전히 책임회피의 의미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Kronning(2003:142)에 따르면 인식적 조건법의 책임회피 가치는 ‘영형 양태화’에 해당한다. 복합적 양태화가 발화내용이 참인지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영형 양태화는 이러한 판단 자체를 거부하고, 발화내용의 진위는 화자가 결정한 것이 아님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인식적 조건법의 책임회피 가치는 화자가 전달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의 진릿값이 화자 자신이 부여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67)에서 우리는 두 번째 문장을 근거로 화자가 자신의 발화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68)의 화자는 발화내용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화내용 정보의 진릿값을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 위해 인식적 조건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67)에서 인식적 조건법의 책임회피 가치가 가변적이라는 Dendale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제 인식적 조건법의 책임회피 가치와 보고증거성 가치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자. 불확실성의 가치와는 달리 책임회피와 보고증거성 가치는 단일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인식적 조건법에 관한 증거성 연구에서는 이 형태의 기본 가치를 규정하기 위해 책임회피의 가치와 보고증거성 가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려 시도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endale은 증거성 의미에서 책임회피의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주장한다. 보고증거성이 사용된 발화내용은 화자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발화내용의 확실성 또한 출처 화자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보고증거성을 사용한 화자는 전달된 정보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최대한으로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보고증거성 가치를 책임회피 가치에 내포된 일종의 의미 효과로 보는 연구도 존재한다. Abouda(2001)는 책임회피 가치만이 인식적 조건법의 기본 자질에 해당하며 보고증거성 가치를 책임회피 가치의 결과로 제시한다. Abouda(2001:283)는 Ducrot(1984)의 다성(polyphonique) 이론을 통해 책임회피 가치와 보고증거성 가치의 관계를 설명한다. 모든 발화에는 언어상의 추상적 존재인 발화자(énonciateur)가 할당된다. 발화의 생산자인 화자(locuteur)는 자신과 발화자를 동일시하여 발화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책임을 표명할 수 있다. 반대로 화자는 발화내용의 책임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이 발화에 또 다른 발화자(autre énonciateur)를 할당하여 자신과 발화자가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요컨대 책임의 거부는 이 발화내용을 책임질 다른 발화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확장되며 여기에서 인식적 조건법의 보고증거성의 의미가

파생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두 주장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보고증거성과 책임회피 사이에 특정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 주장 모두 동의하고 있다. 특히 보고증거성과 책임회피는 개념적으로 공유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두 의미 가치 모두에서 화자는 자신이 전달한 정보의 진릿값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고증거성 표지가 사용된 발화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 내용을 화자에게 전해준 출처 화자가 판단한 것이며, 따라서 화자는 자연스럽게 발화의 진위로부터 거리를 두게 된다. 마찬가지로 발화내용에 대한 책임 거부는 화자가 전달된 정보의 진릿값을 자신이 부여하지 않았음을 표명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인식적 조건법이 나타내는 발화내용의 진릿값과 화자의 분리는 증거성 연구 이전에도 자주 등장한다. Haillet(1998, 2002)는 인식적 조건을 발화적 이타성의 조건법(*conditionnel d'altérité énonciative*)이라 부르며, 화자 자신 이외의 다른 별도의 화자가 있음을 암시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Haillet 2002:14). 인식적 조건법을 차용된 정보의 조건법(*conditionnel de l'information d'emprunt*)으로 명명한 Martin(1992:149~150)은 인식적 조건법을 화자의 믿음 영역(*univers de croyance, u*)에서 작용하는 조건법 유형으로 분류한다⁹⁾. 화자는 인식적 조건법을 통해 자신의 믿음 영역(*u*)을 다른 믿음 영역(*hétéro-univers, u'*)으로 전이시킨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믿음 영역이 아니므로 발화에 대해 책임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발화내용의 진릿값과 화자의 분리를 중심으로 책임회피 가치와 보고증

9) 믿음 영역(*univers de croyance*)이란 “발화 순간에 화자가 참으로 여기거나 상대방에게 참으로 믿게 하고자 하는 명제들의 총체”를 말한다(Martin 1992:38). Martin은 조건법의 용법을 가능 세계(*monde possible*)의 조건법과 믿음 영역의 조건법의 유형으로 구분하며(Martin 1992:146),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인식적 조건법은 믿음 영역 조건법에 해당한다.

거성 가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한다면, Dendale의 제시한 것과 같이 책임회피의 가치를 보고증거성 가치의 결과적 가치로서 규정할 수 있다. Dendale(2018:69)에 따르면 자기가 말한 발화내용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모습은 일반적 상황에서 화자가 쉽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발화내용이 참이라고 믿거나 혹은 거짓이라 믿는 경우 화자는 이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조절할 것이다. 그러나 화자가 전달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이 정보의 진릿값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자 한다면 이는 특수한 조건이 필요할 것이며, 인식적 조건법의 보고증거성 가치가 이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식적 조건법이 보고증거성 표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Dendale과 같이 인식적 조건법의 의미 가치 중 보고증거성만이 단일하고 불변하는 가치로 보지는 않으며, Kronning(2002, 2003, 2018)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책임회피 역시 인식적 조건법의 의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임회피 의미 또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직설법과 비교할 때 식별 자질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Kronning 2018:81).

(71) Selon Pierre, Marie *est(était, fut, etc.)* malade.

(72) Selon Pierre, Marie *serait* malade.

이처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책임회피와 보고증거성 중 어느 하나가 강조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두 의미 가치 중 어느 하나가 배제되거나 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식적 조건법의 의미자질과 관련하여 Kronning의 견해를 지지하며, 인식적 조건법이 프랑스어의 보고증거성 표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어의 증거성에 관한 선행 논의들을 토대로 프랑스어 증거성의 유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증거성 표지 분류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해보았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증거성의 정의와 특성, 문법적 지위, 하위 범주 유형을 살펴보았다. 초기 증거성 연구에서는 증거성을 독립된 범주로 다루지 않고 주로 인식 양태의 하위 유형으로서 간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연구 경향에 따라 증거성의 의미를 정보 획득 출처 또는 방법에 한정시키면서 타 문법범주들로부터 독립된 범주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증거성의 하위범주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Plungian(2010)이 제시한 직접증거성, 추론증거성, 보고증거성의 삼원 구조를 중심으로 증거성의 하위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프랑스어 증거성과 증거성 표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증거성은 프랑스 언어학에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으나, 기존의 문법 개념들만으로 설명하기 까다로웠던 내용과 특히 프랑스어 표현들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개별 어휘·형태들의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어에서 증거성은 문장 성립을 위한 필수 구성성분이 아니며 형태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프랑스어는 타 문법범주로 분류되었던 형태와 어휘적 방법을 통해 증거성의 의미를 실현한다.

4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증거성 표지로 논의되었던 문법적 표지인 ‘devoir의 인식적 용법’, ‘pouvoir의 인식적 용법’, ‘추측의 미래’, ‘인식적 조건법’이 실제로 고유한 증거성 의미를 지니고 정보의 출처·획득 방법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devoir*의 인식적 용법과 *pouvoir*의 인식적 용법의 양태 가치는 개연성의 의미로 일정하다는 점과 다른 표지들과 비교할 때 식별 자질로 기능하는 의미 가치가 증거성 가치가 아닌 인식 양태 가치라는 점을 들어 *devoir*의 인식적 용법과 *pouvoir*의 인식적 용법의 추론증거성 가치는 이 동사의 기본 가치가 아닌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추측의 미래는 특정한 상황적 조건 하에서는 추론증거성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변했을 때 증거성 의미 역시 사라지게 되므로 추측의 미래 용법의 의미 내용에 추론증거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인식적 조건법에 대해서 Dendale(1993)은 발화내용의 불확실성과 화자의 책임회피, 보고증거성, 이 세 특징 중 중 보고증거성의 의미만이 단일한 가치이므로 기본 가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본 논문에서는 Kronning(2002, 2003, 2018)의 주장과 같이 책임회피 가치 역시 상황이나 맥락과 관계없이 유지되는 의미이므로 책임회피 또한 인식적 조건법의 고유한 의미 가치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고증거성은 화자를 발화내용의 진릿값으로부터 분리시켜 이에 따른 결과로 책임회피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식적 조건법을 프랑스어 보고증거성 표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 유형론 연구에서 제시하는 범주적 제한을 바탕으로 프랑스어의 증거성 표지 중 문법적 표지에 해당하는 표현만을 연구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프랑스어는 이러한 문법적 표현보다 증거성의 의미를 어휘적으로 실현하는 표현들이 더 많이 존재하며, 따라서 프랑스어 증거성 전반을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보 출처 표시의 기능을 의미적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지와 이에 따른 이점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Bibliographie

- 김진웅. (2012). 한국어 증거성의 체계: 유형론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 미학』 39, 101-124.
- 송재목. (2007). 증거성(evidentiality)과 주어제약의 유형론: 한국어, 몽골어, 티벳어를 예로 들어. 『형태론』 9(1), 1-23
- 송재목. (2009). 인식양태와 증거성. 『한국어학』 44, 27-53.
- 송재목. (2015). 증거성과 인칭의 상호작용. 『언어학』 73, 111-132.
- 이선경., & 박혜선. (2015). 매개성과 담책의 개념에 대한 고찰. 『프랑스 학연구』 74, 165-198.
- 이희영. (2009). 정보 출처 표지 연구: paraître와 sembler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78, 305-329.
- 정경미. (2016). 한국어 추론증거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정인아. (2010). 한국어의 증거성 범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Abouda, L. (2001). Les emplois journalistique, polémique et atténuatif du conditionnel. Un traitement unitaire. *Le conditionnel en français*. Metz: Université de Metz, 277-294
- Aikhenvald, A. Y. (2003). Evidentiality in typological perspective.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54, 1-32.
- Aikhenvald, A. Y. (2004). *Evidenti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ikhenvald, A. Y. (2007). Information source and evidentiality: what can we conclude. *Rivista di linguistica* 19(1), 209-227.
- Aikhenvald, A. Y. (2014). The grammar of knowledge: a

- cross-linguistic view of evidentials and the expression of information source. *The grammar of knowledge: A cross-linguistic typ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51.
- Anderson, L. B. (1986). Evidential. Paths of Change, and Mental Maps: Typologically Regular Asymmetries.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Norwood, NJ: Ablex, 273-312.
- Barbet, C. (2012). Devoir et pouvoir, des marqueurs modaux ou évidentiels?. *Langue française* 152(1), 49-63.
- Barbet, C., & Saussure, L. DE. (2012). Présentation: Modalité et évidentialité en français. *Langue française* 1, 3-12.
- Bellahsène, L. (2007). L'expression de la conjecture: le cas du futur en français. *Représentations du sens linguistique*. Bruxelles: De Boeck, 253-266.
- Boas, F. (1947). Kwakiutl grammar, with a glossary of the suffixes.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37, 201-377
- Bourova, V., & Dendale, P. (2013). Serait-ce un conditionnel de conjecture? Datation, évolution et mise en relation des deux conditionnels à valeur évidentielle. *Marqueurs temporels et modaux en usage*. Brill: Rodopi, 183-200
- Bybee, J.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9. Amsterdam: Benjamins.
- Caudal, P. (2012). Relations entre temps, aspect, modalité et évidentialité dans le système du français. *Langue française* 152(1), 115-129.
- Coltier, D., & Dendale, P. (2004). Discours rapporté et évidentialité:

- comparaison du conditionnel et des constructions en selon N. *Le discours rapporté dans tous ses états*. Paris: L'Harmattan, 587-597.
- De Haan, F. (1999). Evidentiality and epistemic modality: Setting boundaries. *Southwest journal of linguistics* 18(1), 83-101.
- Dendale, P. (1991). Le Marquage épistémique de l'énoncé. Esquisse d'une théorie avec applications au français.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d'Anvers.
- Dendale, P. (1993). Le "conditionnel de l'information hypothétique": marqueur modal ou marqueur évidentiel?. *Actes du XXe Congrès international de linguistique et philologie romanes*, 163-176.
- Dendale, P. (1994). Devoir épistémique, marqueur modal ou évidentiel ?. *Langue française* 102, 24-40.
- Dendale, P. (2001a). Le futur conjectural versus devoir épistémique: différences de valeur et de restrictions d'emploi. *Français moderne* 69(1), 1-20.
- Dendale, P. (2001b). Les problèmes linguistiques du conditionnel en français. *Le conditionnel en français*. Metz: Université de Metz, 7-18.
- Dendale, P. (2018). Évidentialité ou non-prise en charge? Le cas du conditionnel épistémique en français. Une réanalyse. *Langue française* 200(4), 63-76.
- Dendale, P., & De Mulder, W. (1996). Dédution ou abduction: le cas de devoir inférentiel. *L'énonciation médiatisée*. Louvain/Paris: Peeters, 305-318.

- Dendale, P., & Tasmowski, L. (1994). Présentation: l'évidentialité ou le marquage des sources du savoir. *Langue française* 102, 3-7.
- Dendale, P., & Tasmowski, L. (2001). Introduction: Evidentiality and related notions. *Journal of pragmatics* 33(3), 339-348.
- Dendale, P., & Van Bogaert, J. (2007). A semantic description of French lexical evidential markers and the classification of evidentials. *Rivista di Linguistica* 19(1), 65-89.
- Dendale, P., & Van Bogaert, J. (2012). Réflexions sur les critères de définition et les problèmes d'identification des marqueurs évidentiels en français. *Langue française* 152(1), 13-29.
- Dendale, P., & Vanderheyden, A. (2018a) À la recherche de nouveaux marqueurs évidentiels : le cas de à vue d'œil. *SHS Web of Conferences* 46, Congrès Mondial de Linguistique Française-CMLF 2018, 1-19. <https://doi.org/10.1051/shsconf/20184601014>.
- Dendale, P., & Vanderheyden, A. (2018b). À vue de nez, un marqueur évidentiel bien particulier. *Communication au 13ème colloque Chronos, Neuchâtel*, 4-6.
- Dendale, P., Vanderheyden, A., & Izquierdo, D. (2020). Visiblement en français, visiblement en espagnol: des marqueurs évidentiels de perception directe ou d'inférence. *Marcadores del discurso y lingüística contrastiva en las lenguas románicas*, Madrid/Frankfurt: Iberoamericana Vervuert, 63-96.
- Desclés, J. P., & Guentchéva, Z. (2001). La notion d'abduction et le verbe devoir 'épistémique'. *Cahiers Chronos* 8, 103-122.
- Dixon, R. M. (2005). *A semantic approach to English gramm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ller, M. (2002). Semantics and pragmatics of evidentials in Cuzco Quechua.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Grevisse, M. (1980). Le Bon usage, 11^e édition. Gembloux: Duculot.
- Grossmann, F., & Tutin, A. (2010). Evidential markers in French scientific writing: The case of the French verb voir. *Linguistic realization of evidentiality in European languages*. Berlin/Boston: De Gruyter Mouton, 279–308.
- Guentchéva, Z. (1994). Manifestations de la catégorie du médiatif dans les temps du français. *Langue française* 102, 8–23.
- Guentchéva, Z. (2004). La notion de médiation dans la diversité des langues. *Les médiations langagières* 1, 11–33.
- Haillet, P. P. (1998). Le conditionnel d'altérité énonciative et les formes du discours rapporté dans la presse écrite. *Pratiques* 100(1), 63–79.
- Hoff, B. J. (1986). Evidentiality in carib Particles, affixes, and a variant of Wackernagel's law. *Lingua* 69(1–2), 49–103.
- Huot, H. (1974). Le verbe devoir: étude synchronique et diachronique. Paris: Klincksieck.
- Ifantidou, E. (2005). Evidential particles and mind-reading. *Pragmatics & Cognition* 13(2), 253–295.
- Jacobsen, W. H. (1986). The heterogeneity of evidentials in Makah.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Norwood, NJ: Ablex, 3–28.
- Jakobson, R. (1957).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Harvard University. Department of Slavic Languages and Literatures, Russian Language Project.

- Kim, M. (2004). Une description des marqueurs évidentiels on dit que et on dirait que. *Travaux de linguistique* 48(1), 41-52.
- Koshal, S. (1979). *Ladakhi grammar*. Delhi: Motilal Banarsidass.
- Kronning, H. (1990). Modalité et diachronie: du déontique à l'épistémique. L'évolution sémantique de debere/devoir. *Actes du Onzième Congrès des Romanistes Scandinaves, Trondheim 13-17 août 1990*. Trondheim: Institut d'études Romanes, Université de Trondheim, 301-312.
- Kronning, H. (1996). Modalité, cognition et polysémie: sémantique du verbe modal devoir. Uppsala/Stockholm: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 Kronning, H. (2001). Pour une tripartition des emplois du modal devoir. *Cahiers Chronos* 8, 67-84.
- Kronning, H. (2002). Le conditionnel 'journalistique': Médiation et modalisation épistémiques. *Romansk Forum* 16, 561-575.
- Kronning, H. (2003). Modalité et évidentialité. *Aspects de la Modalité*. Berlin: de Gruyter, 131-151.
- Kronning, H. (2012). Le conditionnel épistémique: propriétés et fonctions discursives. *Langue française* 152(1), 83-97.
- Kronning, H. (2018). Epistemic modality and evidentiality in Romance: the Reportive Conditional. *Epistemic Modalities and Evidentiality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Berlin: De Gruyter, 69-102.
- Lazard, G. (2000). Le médiatif: considérations th oriques et application à l'iranien. *Evidentials: Turkic, Iranian and neighbouring languages*. Berlin: de Gruyter, 209-228.

- Lazard, G. (2001).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evidentiality. *Journal of pragmatics* 33(3), 359–367.
- Martin, R. (1992). *Pour une logique du sens*. Paris, PUF.
- Matlock, T. (1989, November). Metaphor and the grammaticalization of evidentials.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5, 215–225.
- Mellet, S. (1989). À propos du futur: temps et modalité. *Cahiers de l'Institut de Linguistique de Louvain* 15(i-4), 269–278.
- Mithun, M. (1986). Evidential diachrony in northern Iroquoian.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Norwood, NJ: Ablex, 89–112.
- Mushin, I. (2001). Japanese reportive evidentiality and the pragmatics of retelling. *Journal of pragmatics*, 33(9), 1361–1390.
- Nølke, H. (1994). La dilution linguistique des responsabilités: Essai de description polyphonique des marqueurs évidentiels “il semble que et il paraît que”. *Langue française* 102, 84–94.
-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ungian, V. A. (2001). The place of evidentiality within the universal grammatical space. *Journal of pragmatics* 33(3), 349–357.
- Plungian, V. (2010). Types of verbal evidentiality marking: an overview. *Linguistic realization of evidentiality in European languages*. Berlin: de Gruyter, 15–58.
- Rivière, C. (1984). Les équivalents anglais de «devoir» et «falloir ».

Cahiers Charles 6(1), 7-27.

- Robert, P. (2010), *Le Nouveau Petit Robert 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Le Robert.
- Rossari, C. (2012). Valeur évidentielle et/ou modale de faut croire, on dirait et paraît. *Langue française*, (1), 65-81.
- Rossari, C., Cojocariu, C., Ricci, C., & Spiridon, A. (2007). Devoir et l'évidentialité en français et en roumain. *Discours. Revue de linguistique, psycholinguistique et informatique. A journal of linguistics, psycholinguistics and computational linguistics*, (1).
- Saussure, L. DE (2012). Modalité épistémique, évidentialité et dépendance contextuelle. *Langue française* 152(1), 131-143.
- Squartini, M. (2001). The internal structure of evidentiality in Romance. *Studies in Language* 25(2), 297-334.
- Sueur, J. P. (1975). *Etude sémantique et syntaxique des verbes devoir et pouvoir. Recherches sur des modalités en grammaire*.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Paris Nanterre.
- Tasmowski, L., & Dendale, P. (1994). Pouvoir_E: un marqueur d'évidentialité. *Langue française* 102, 41-55.
- Thuillier, F. (2004). Le verbe paraître: surgissement, manifestation, impression, ouï-dire. *Linx. Revue des linguistes de l'université Paris X Nanterre* 50, 15-32.
- Togoby, K. (1982) *Grammaire française*. Copenhague: Akademisk Forlag.
- Van der Auwera, J., & Plungian, V. A. (1998). Modality's semantic map. *Linguistic typology* 2(1), 79-124.
- Vet, C. (1988). Book review of Wallace Chafe and Johanna Nichols,

1986.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33, 65-77.
- Vet, C., & Kampers-Manhe, B. (2001). Futur simple et futur du passé: leurs emplois temporels et modaux. *Le conditionnel en français*. Metz: Université de Metz, 89-104.
- Vetters, C. (2012). Modalité et évidentialité dans pouvoir et devoir: typologie et discussions. *Langue française* 152(1), 31-47.
- Willett, T. (1988). A cross-linguistic survey of the grammaticization of evidentiality. *Studies in Language* 12(1), 51-97.
- Wilmet, M. (1997). *Grammaire critique du français*. Louvain-la-Neuve: Duculot.

Résumé

Étude sur les marqueurs évidentiels en français

YOO JaeMin

Maîtrise en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Dans cette présente recherche, nous avons synthétisé les différentes recherches effectuées jusqu'à présent sur l'*évidentialité* en français. L'*évidentialité* renvoie à une catégorie grammaticale qui indique, à travers son marqueur, la source d'une information énoncée par un locuteur.

Cette étude a pour objectif d'analyser les diverses particularités de ces *marqueurs évidentiels* et de se pencher sur la 'valeur fondamentale' que peut posséder le marqueur correspondant.

Pour ce faire, dans un premier temps, avant d'analyser les divers marqueurs évidentiels, nous avons examiné les concepts de l'évidentialité, ses caractéristiques, sa position grammaticale et les différents types de sous-catégories. Au départ, les

linguistes ont classé l'évidentialité dans un sous-groupe particulier de modalité, puis celui-ci a progressivement été considéré comme une catégorie autonome possédant une position indépendante. A la lumière de cette constatation, nous avons relaté que l'évidentialité renvoyait à une notion différente par rapport à la *modalité épistémique*. Concernant les sous-catégories de l'évidentialité, nous avons regroupé ces sous-groupes en les reclassant dans trois catégories précises et proposées par Willett(1988), Plungian(2010) et Aikhenvald(2004) : 'évidentialité directe', 'évidentialité inférée' et 'évidentialité rapporté'.

Dans un deuxième lieu, nous avons examiné la caractéristique à la fois des marqueurs évidentiels et celle de l'évidentialité en français via une analyse des études antérieures faites jusqu'à aujourd'hui. Nous avons pu constater que l'évidentialité en français ne s'exprimait pas en fonction des éléments nécessaires à la formation d'une phrase, mais bien en fonction d'un choix volontaire du locuteur afin d'accomplir son but énonciatif. En outre, il n'existe pas d'unité qui renvoie uniquement à un *sens évidentiel* en français. En effet, il peut également s'agir d'une unité correspondant à un autre groupe grammatical, ou bien à une réalisation à travers un procédé, moyen lexical. Par la suite, nous avons analysé les différents marqueurs se trouvant dans le 'conditionnel épistémique', le 'devoir épistémique', le 'pouvoir épistémique' et le 'futur conjecture', puis nous avons répertorié, pour chacun des temps, leurs caractéristiques et leurs emplois. Ensuite, nous avons analysé les expressions sous-entendant

l'évidentialité sur un plan lexical comme '*je trouve que*', '*je pense que*', '*visiblement*', '*voir*', '*à vue de nez*', '*à vue d'oeil*', '*il semble que*', '*il paraît que*'.

Pour finir, nous avons analysé si les marqueurs évidentiels indiquaient la source de l'information et possédaient un sens évidentiel en tant que valeur fondamentale en français. D'une part, nous avons pu montrer qu'il ne s'agissait pas de marqueur évidentiel dans le cas du *devoir épistémique*, *pouvoir épistémique* et du *futur conjecture*. En effet, de ces trois cas, il découle non pas une valeur fondamentale, mais un sens secondaire dérivant du contexte. D'autre part, nous nous sommes aperçu que le conditionnel épistémique disposait en tant que valeur fondamentale à la fois d'un sens évidentiel et d'un sens épistémique, dit non prise en charge. Donc, nous avons suggéré de suivre le courant linguistique qui associe le conditionnel épistémique à un marqueur évidentiel rapporté.

Mots-Clés : évidentialité, marqueur évidentiel, modalité épistémique, conditionnel épistémique, devoir épistémique, pouvoir épistémique, futur conjecture